

제412회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월24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1)
-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2)
-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3)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19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0)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53)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9)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8)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01)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4)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3)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1)
- 문화재영향진단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32)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38)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9)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6)

3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5.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0)
40.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35)
41.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6)
4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3.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8)
4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3)
4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8.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3)
4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5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512)
51.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48)
5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2)
5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1)
5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19)
55.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5)
56.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57)
5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6)
58.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5)
59.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6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62.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6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9)
64.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1)
65.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02)
66.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58)
67.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6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6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3)
7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3)
7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3)
7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7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7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75.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34)
7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7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7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8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8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8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8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2)
8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6)
8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7)
8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3)
8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0)
8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1)
8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9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9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2)
9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9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9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4)

상정된 안건

2.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1) … 6
3.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2) … 6
4.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6
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3) … 6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194) … 6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0) … 6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53) … 6
10.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9) … 11
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8) … 11
1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01) … 12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12
1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12
1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4) … 15
1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5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26
1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3)	26
19.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27
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8
2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8
2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8
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8
2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8
2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1
2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1)	31
27. 문화재영향진단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32)	31
2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1
2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1
30.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38)	35
3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9)	35
32.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6)	35
3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5
3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5
35.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5
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5
3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5
3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5
3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0)	39
40.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35)	39
41.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6)	39
4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9
43.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8)	39
4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3)	39
4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9
4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9
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9
48.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3)	39
4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9
5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512)	39
51.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48)	45
5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2)	45
5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1)	45
5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19)	45
55.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5)	45
56.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57)	45
5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6)	45
58.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5)	45
59.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45

6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45
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45
62.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45
6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9) ……	45
64.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1) ……	51
65.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24302) ……	51
66.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58) ……	51
67.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1
6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1
6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3) ……	51
7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3) ……	51
7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3) ……	51
7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1
7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1
7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1
75.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8034) ……	53
7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3
7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3
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3
7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3
8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3
8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3
8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3
8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2) ……	53
8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6) ……	53
8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7) ……	53
8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3) ……	53
8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0) ……	53
8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1) ……	53
8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3
9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3
9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2) ……	53
9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4
9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4
9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4) ……	54

(14시33분 개의) 다.

○위원장 김도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제1소위 의결 법안과 미상정 및 전체회의의 계류 타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사 간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및 참석자 명단 등은 회의석상에 배부되어 있으며 심사 대상 안건, 검토보고 및 보고사항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화실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고유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1)

3.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792)

4.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3)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120194)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0490)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53)

(14시34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2항부터 9항까지 8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소병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소병철 위원장님, 서면으로…… 오늘은 좀 빨리빨리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김도읍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소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 소위원장을 비롯한 법안심사1소위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예.

○소병철 위원 소병철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소위에서 의결된 법들에 대해서 의결 후에 좀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제실종 관련 법은 김영배 위원님이 아마 시민단체들이나 민변의 이견이 있다고 해서 발언을 하실 걸로 압니다.

저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지고, 이 법이 지금 관련된 지방세법하고 시행시기 사이의 차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 부칙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위원들께서 이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오늘 자리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 오늘 갑자기 자료가 배포되면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법 시행시기의 부칙 문제를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도읍 토론시간에 하시면 안 됩니까?

○소병철 위원 팬찮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토론이 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심우정 법무부장관직무대행님 출석하셨습니다.

그래도 법원행정처장님 또 법무부장관직무대행님 첫 회의인데 간단하게, 두 분 간략하게 인사 말씀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인사말을 준비해 오지 않아서 당황스럽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주시는 귀한 말씀, 좋은 말씀 잘 듣고 사법행정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심우정 법무부장관직무대행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심우정 국민의 기본권과 민생의 안전 또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법사위원님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조언 주시면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정점식 위원 소병철 간사님 아까 마무리 먼저 하시지요.

○소병철 위원 아, 그렇까요?

감사합니다, 정점식 간사님.

앞서 말씀드렸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부칙 수정안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위원님들 책상에 다 배부를 해 드렸다고 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내용만 설명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실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법이 동시에 처리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이 다소 늦게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가 되는 바람에 일부, 2024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시행된 이후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청된 도산, 파산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지방세법의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지방세법 부칙을 수정해서 적용,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됐습니까?

○소병철 위원 그래서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백을 지금 뒤늦게 개정하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수정안으로 넣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이,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시고 관련 부처들이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간사님, 특별한 말씀 없으시지요?

○정점식 위원 지금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법 부칙을 우리 위원회에

서 바로 개정을 해도 되니까, 법리적으로?

○전문위원 이화실 예,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해서 부칙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입법례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이라고 하는 제명을 가진 2항, 3항에 대한 대안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토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원입법으로 제기가 되어서 대안으로 마련이 된 법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라고 하는 그 국제협약을 국내 이행법화하는 그런 단계의 법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협약을 국내 이행법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추가로 대상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적용 범위 과정에서의 규정과 관련돼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시민단체들로부터 제기해 온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추가로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계류해 놓고 추가 논의를 좀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강제실종이라고 하는 게 법안 제2조에 보면 이 행위 자체가 정의상으로 볼 때 강제실종의 개념이 축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 가지고 강제실종의 개념이 축소돼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첫 번째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보면 이게 목적 조항에서 국내 이행법안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제3조에 보면 3조 1호에 단서를 달아 가지고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어 놔습니다.

이게 법의 제명에서 보듯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닌 다른 모든 개인과 단체가 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다고 보이고, 우리나라 법제상으로도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만 사실상 되어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국제법상 볼 때, 국제법상은 남과 북을 다른 국가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타국에 이 법률이 미치게 되는,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국제법상의 어떤 그런 문제하고도 약간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대안 법안 3조 4호에 보면 피해자를 직계가족 쪽에 한정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범위가 좀 축소됐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자 범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13조에도 보면 상급자의 책임 부분이 협약보다 요건이 좀 완화됐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 등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한테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협약이 일반적으로 소위 유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공인되어 있는 일반적인 인권규약이기 때문에 인권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하고 좀 더 국내에서도 폭넓은 논의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 놓고 추가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우선은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결국 이 법은 우리 국내에서 시행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소위 국가의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강제실종에도 이 조항을,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국가 부분에 반국가단체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의 범위에 지금 여기에는 피해자를 실종 사건의 당사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사돈의 팔촌까지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김영배 위원님께서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지……

아니면 법무부차관님 제가 지적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하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심우정 일단 첫 번째 자

유의 박탈을 부인하는 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개념이 축소되어 있다는 부분은요, 저희 법안에 의하면 자유의 박탈뿐만 아니라 자유의 박탈 사실, 자유의 박탈을 당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은폐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협약에 비해서 축소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법률과 판례가 다 그같이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자유권 규약, 협약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직계존비속은 사실상 배우자까지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를 넓힌다면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 말씀하신 어느 범위까지 넓히는 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안이 이렇게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피해자 범위에 당사자 본인, 실종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심우정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다 포함돼 있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심우정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지금까지 이 범위, 예를 들어 가지고 사촌이 피해자 부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냐 이런 논의는 사실은 성립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심우정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13조에 상급자 책임범위를 축소했다고 지적한 부분과 관련해서 영미법계와 우리나라가 과실범을 규정하는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때 논의될 때 이 1항 법문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범 처벌규정까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규정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결론을 지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책임범위가 축소됐다는 그 주장의 근거는 아마 이 조항상에 과실범까지 포함돼 있지 않다 하는 이런 주장이 아닌가 싶은데……

차관님, 여기에 지금 13조 1항 보셨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심우정** 예, 봤습니다.

○**유상범 위원** 거기에 보면 소위 미필적 고의범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심우정**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 규정 내용에 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여’ 이 규정으로 하면 과실범에 2항의 과실범의 행태가 다 포괄이 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심우정**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책임범위가 축소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는데 갑자기 또 다른 말씀이 나오시니 이것은 조금, 국제협약과도 규정을 전부 반영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이론은 조금, 그 주장은 조금 납득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 소병철 위원입니다.

조금 아쉬운 게 이 법이 여야 의원님들이 각각 발의를 하셔서 1소위에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점식 위원님이나 유상범 위원님 발언하셨듯이 논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검토를 하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법이 제출된 연혁을 보니까 민주당 의원님 발의 법은 21년 1월에 제출이 됐고 국민의힘 의원님은 22년 5월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회의 상정은 21년 2월 달에 되고 소위에서 9월 달에 심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너무 아쉬운 게 법사위가 이제 과연 몇 번이나 더 열릴지 상황이 지금 확실히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 법이 한 분이라도 빨리 시급하게 구제를 하고 실효성이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님, 그래서 김영배 위원님도 주된 시민단체들에서 의견 제시를 해 주셔서 그것을 대변을 하셨습니다. 저희 방에도 자료를 보내 오셨는데요. 이것을 지금 굉장히,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도 선뜻 수용이 곤란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한 번만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주면 저희 방에서도 이 제기한 분들한테 현재 상황을 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서 심사를 하자고 하면 아마 21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도 드려서 이런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하실 것인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님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글썽 말입니다, 지금 김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정점식 간사님이나 유상범 위원님께서 또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제가 봐도 두 분 말씀이, 유상범 위원님이나 정점식 간사님 말씀이 일단 대한민국 법 전체적인 체계라든지 이런 데 벗어난 부분이 없고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어느 단체에서 반론을 제기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지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즉 북한을 지칭하는데 강제실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 위험에 근접해 있는 부분이 여기 아납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수한 상황이 있고 이 법이 실효적으로 발동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고 전례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아마 소위원회에서 추가를 한 거지요?

○**유상범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소위원회 심사 과정을 제가 들어 보니까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간사님, 어떻습니까? 소병철 간사님께서……

○**정점식 위원** 일단 31일 법사위 개최 가능성이 크니까 그때까지…… 다만 만일 4항을 계류시키려고 그러면 5항도 함께 계류를 해야 됩니다. 연계 법안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그렇지요.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김도읍**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이 법이 1소위에서 다 논의 끝에 수정안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가 됐는데요, 제가 상반기에는 법사위 1소위 심사 위원이었습니다만 이런 예는 보지 못했습니다. 법사위원들이 1소위에 참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1소위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통과된 법은 그냥 바로 전체회의에서 별다른 이론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체에서도 분명히 이 법사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소위에 참여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류를 주장하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현재는 1소위 소속이 아니라 제가 이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습시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3항이나 4항 이런 것은 오히려 더, 봤을 때 직무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과실이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유기한다는 것까지, 상급자의 책임을 오히려 더 묻는…… 이런 실효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하급자의 10조의 죄를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때 오히려 상급자에게 더욱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법안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면에서 지금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전혀 반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류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좀 명분이 없는 계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소병철 간사님을 비롯해서 1소위에 참여하신 위원님들, 민주당 위원님들도 계시는 마당에 전체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감을 표시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친 이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도읍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송기현 위원입니다.

물론 1소위에서 잘 심사숙고해서 논의가 된 법안의 경우에 전체회의에서 그것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기는 하지만 소위에서 논의할 때 참여하지 않았던 위원님들께서 소위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종종 전체회의에서도 소위에서 의결된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이 좀 더 검토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위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추가로 소위에 있는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거나 아니면 참여하지 않았던 위원님께서 그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면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을 수정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소위와 전체회의를 두고 있는 체제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소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배 위원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럴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법사위는 꾸준

히 본회의가 있으면 계속해서 그 전달이나 그날 전에 법사위를 하기 때문에 그때 하셔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도읍 소위원장님, 이게 아마 시민단체 의견서인 것 같은데 국가보안법 2조의 반국가단체를 포함한 것은 기존의 국가 또는 국가가 지원하는 개인·단체 여기 나열돼 있고, 이것은 협약하고 똑같지요. 플러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이게 지금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축소됐다고는 할 수 없는 거지요.

정점식 간사님, 그렇지요?

○정점식 위원 예, 전혀……

○소병철 위원 저희들이 논의 과정에서……

○정점식 위원 예를 들자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상으로는 북한도 당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법상으로는 북한을 헌법에 의해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득이하게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을 도입했던 것이고.

지금 국제인권네트워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소위 협약에서는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라고 돼 있어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강제실종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서 지적한 3조 1호 가목의 경우에도 ‘한 후 그 자유박탈 사실 또는 자유박탈을 당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은폐’라고 돼 있는 경우거든요. 결국은 자유박탈 사실을 은폐하는 것, 부인하는 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 법안 자체를 자유인권네트워크에서 오해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명시하고, 그쪽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하셨으니까 오늘 이후 가장 빠른 시간에 진행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도읍 예.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다음번까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

하신 것 중에 쟁점들이 디테일하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더 논쟁하기가 그러니까요 일단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번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렇게 하시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부터 제9항까지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국회법 58조 5항 및 같은 법 79조의2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 및 7항, 2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8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대체토론시 논의된 부칙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는 전체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대엽 처장님, 심우정 장관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상정 및 전체회의 계류 타위법을 심사하겠습니다.

10.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159)

(15시02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0항 주류 면허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의사일정 제10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가 취소된 자가 친인척 등을 통해 면허를 재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면허가 취소된 후 2년 이내에는 특수관계인의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김병환 기재부1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198)

(15시03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1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의사일정 제11항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타인의 여권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금지 규정과 벌칙 규정의 조문이 서로 일관성 있게 개정될 수 있도록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강인선 외교부2차관님 출석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101)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5시04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2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4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3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화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가 35%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평가에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현재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어 법제화할 실익이 없고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체계 및 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3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오석환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차관님, 14항의 13조 3항을 기재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삭제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전체를 그냥 삭제한 겁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이게 퍼센티지를 반영해서 35% 조항은 그대로 두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지금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만 삭제했고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기진행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어떤 규정에 따라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경영평가 말씀하십니까?

○김영배 위원 예.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것은……

○김영배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한 거라고……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영배 위원 시행령에 있나요? 아니면 기재부 지침인가요, 어떻게 되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시행령에는 권고사항으로 35%가 반영되어 있고요, 경영평가는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이걸 퍼센티지는 있는데 경영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 실제로 이게 이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검토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어 있고요, 더더군다나 법률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반영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운영 과정에서 기재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의무화 부분을 삭제를 했다면서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35% 의무화 규정이 종전

에는 권고 규정이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35%는 되는데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법조항에서 뺄 경우에……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삭제하는 겁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35%만 유지하면 된다 이렇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실행 과정에서는 이미 그렇게 반영되고 있고요. 그게 실효성 부분입니다. 법제화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의무 조항으로 법제화되는 상황에서 다시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당연히 기재부하고도, 기재부 입장도 그렇습니다. 사실상으로 법제화돼 있는 것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법제화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 이것 자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차관님!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유상범 위원** 항상 특정 지역의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정 비율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정, 이 취지는 누가 봐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이 채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 또 자격요건에 맞추지 못한다면, 지역인재가 등용 안 되면 그러면 자격요건을 맞추지 않은 지역인재에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그 비율을 채워야 되느냐? 항상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유상범 위원** 이 논란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기에 관한 논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에 이미 권고사항으로 돼 있기는 했습니다. 사실상으로 반영되어서 거의 사회적 논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수도권은 권고사항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제화해서 운영을 할 때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취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하는데, 결국 선발 기준은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유상범 위원** 그런데 수도권은 그 기준을 지역 사람들이 다 맞출 수가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건 또 잘 아시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지역 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법령의 취지에 따라 최대한 노력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청년고용 채용에 대한 5% 율에 대해서 합헌 판결은 했지만 또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실 때 그와 같은 위헌의 소지 여부, 지적한 부분을 잘 반영해서서 대통령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지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완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행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우려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차관님!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조정훈 위원** 유상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두 가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지금 지방대학을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 좋은 인재를 공급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대학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만을 위한 것도 아닌 지역 내에서의 우수인재를 그리고 지역에 더해서 양성된 인재가 좋은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하고 있는 지방시대의 생태계에 필요한 제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4년 이후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조정훈 위원** 둘 다 좋은 제도다라는 건데……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저희는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균형인재의 조건은 대학입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그 지방 소재 대학을 졸업하면……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면 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 지방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출신 고등학교가 그 지방인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거기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조정훈 위원**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방금 말씀하신 유상범 위원님이 계신 지역구, 특히 강원도 춘천 이런 데는요 거의 90%, 80%가 수도권 학생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알고도 모르는 척하시는 건지 이 제도가 과연 지역…… 저는 이게 약간 지방대학 살리기 같은데, 그런데 저도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솔직히 지역인재라면 거기서 태어나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지역인재로 인정을 받아야지 왜 지역대학을 더 우선하냐?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런 논의가 있는 것 알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응은 없으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까지를……

○**조정훈 위원** 중고등학교 졸업해서 현실적으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에 있는 유수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지역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면 이 제도상 아무런 혜택을 입을 수 없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현재 단계는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자라고 수도권에서 자라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방대학을 나오면 또 그 지방대학에서 공공기관에 가는 35% 혜택을 입을 수 있지요?

그러면 지방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득을 봅니까? 수도권과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 득을 봅니까, 이 법에 의하면?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말씀대로……

○**조정훈 위원** 서울과 수도권에서 태어난 분들

이 득을 보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두 개만을 비교할 땐 그럴 수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부차관 오석환** 두 개만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땐 그럴 수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무조건적으로 이 정책의 목적을 위한 수단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걸 지금 의무화시키고 있고 경영평가에까지 넣으려고 하시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조정훈 위원** 과연 이 역차별을 언제까지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겠습니까? 지역인재의 정의를 좀 넓히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까지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조정훈 위원** 고등학교에 상관없이……

○**교육부차관 오석환** 학생들을 지역인재로 규정하고 그 제도를 한 십여 년간 지금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지방대학의 그러한 역할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논의에서 이 법안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거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지역인재에 대한 정의를 더 확대하는 것은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성숙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우선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 논의는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봅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한번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반대는 안 하겠지만.

소위 지역인재로 채용되는 이 학생들이 출신 고등학교가 그 지역 학교인지 아닌지 그 통계자료 있으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저희가 통계 바로 준비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의원실로 좀 보내 주십시오.

이게 만약에 대다수가 그 지역 고등학교와 지역 출신이 아니다, 타지에서 왔다 그러면 이것은 목적에 의한 수단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인정하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 부분만을 말씀하실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다른 지역에 살다가 대학 와서

대학만 짝 졸업하고 지역에서 취직한다 이게 이 법의 목적은 아니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연관되어 있는 영역으로는 지역대학을 졸업하고……

○**조정훈 위원** 이 통계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가 정리되면 바로, 정리되는 대로 근시일 내에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1월 안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문제 인식은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정치하게, 디테일하게 제도를 설계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싶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14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석환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704)

1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5시16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5항 하천법 개정안, 제16항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대안), 이상 2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화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국민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하천구역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하계기간 등에 하천의 불법점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하천을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하천법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상 여가활동 공간의 설치·지자체의 사무이므로 국가가 이를 조성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개정안의 문구는 원칙적으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개정안의 당초 발의취지를 고려하여 국민들이 상인들의 불법점유로 하천구역을 여가활동 공간으로 사용하는 데 제한받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관련 시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임상준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차관님, 하천법 개정안 말씀이지요 이게 우리가 하천을 할 때 보통 이야기되는 게 치수, 이수 뭐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김영배 위원**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도시에서는 특히나 이 하천에서의 치수도 중요하지만 이수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김영배 위원** 그런데 대체로 하천을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맞고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 이수, 치수뿐만 아니라 치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나고, 지난번에

우리도 보면 도심에서 물난리가 나 가지고 강남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강남뿐만 아니지요 지난번 충북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치수와 관련되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더불어서 최근에 이 하천 구간에서의 이수와 관련된, 그래서 여가나 여러 시민들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부가 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법이 지금 발의가 된 거잖아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게 보자면 지금 수정안은 지나치게 하천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법의 범위를 좁혀 놔서 이 법의 원취지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일단 기재부 의견이 기본적으로 이게 지자체 업무인데 국가의 업무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국가의 의무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고……

○**김영배 위원** 그러면 그거는 국가는 의무가 없다고 쓰지, 이거를 보면 ‘하천구역에서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서 여가활동이 제한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미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지금 이 책무조항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앞의 국민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조항과는 완전히 엉뚱한 조항으로 변질됐단 말이지요. 어떻게 이걸 수용하셨어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수용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은 기재부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대안을……

○**김영배 위원** 수용한 거 아니시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대안을 제시를 한 상태고요. 저희가 기재부의 그런 우려를 일부 인정을 안 할 수도 없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할 때 그런 법안의 개정취지를 다 감안해서 논의를 할 거라서……

○**김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애초에 지방사무로 되어 있는 것을 이런 법률이…… 국가가 의무가 생긴다라는 조항도 없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 조항을 반대한다는 게 나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문제 없는 걸로 공연한 트집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기재부는 조항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김영배 위원** 저도 자치단체장을 했지만 지금 우리도 예를 들어 성북천, 정릉천, 서울도 청계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침저녁으로 걷고 출퇴근을 합니까, 자전거를 거기서 엄청나게 타는 거 아닙니까, 한강 주변에서? 그런 지방자치단체 활동을 그냥 단순하게 불법행위, 그러니까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여가활동 제한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 이게 될 말이에요, 지금?

○**환경부차관 임상준** 이 법안 취지가 원래 경기도에서 휴가기간 중에 상인들이 파는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차원으로 나온 겁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 법안에 경기도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잖아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김영배 위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구역 내에서 치수뿐만이 아니라, 치수는 당연히 다른 데 보면 나와 있는데 ‘이수·치수·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라고 써 났잖아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김영배 위원**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강구하도록 한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저희가 이 대안을 낸 게 아니고요 기재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좋습니다. 기재부의 의견은 이견 없도록 많은 의견을 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원안대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차관님, 기본적으로 지금 하천법 제3조에는 국가 등의 책무라고 해 가지고 1항에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정점식 위원** 결국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하천과 관련해서 국가의 책무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정비하며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게 국가의 책무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이 개정안은 국가에게 하천구역이 국민의 여가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을 부여하고 있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정점식 위원 기본적으로 소위 하천구역이 국민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갑자기 하천법을 개정해 가지고 국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책무를 국가에다 부담하는 게 맞습니까?

○환경부차관 임상준 기재부의 의견처럼 저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꼭 국가로만 한정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기재부에서는 당연히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을 걸로 압니다.

○정점식 위원 아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정점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르면 국가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 국가에 대한 의무를 새로 부여하는 거고 이거는 하천법의 기본적인 취지와 맞지 않다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법률개정안이, 수정안 이전의 개정안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반대는 당연한 거지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정부위원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환경부차관 임상준 제가 이해를 못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고 나서 기재부 수정의견은 결국 이게 하천구역 불법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하천구역을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가에 이런, 소위 마련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겠다는 취지로 나온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정점식 위원 결국은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의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서 하천에서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책무를 더 많이 부과하든지, 하천법에 이걸 부과해서야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개정안 3조 2항에서 국가를 빼 버리면 저쪽 기재부는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국가 및’에서 국가를 빼 버리고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이수·치수·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을 국민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을 유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그렇게 일견……

○정점식 위원 일견 보이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정점식 위원 일단 이거를 개정안을 일부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재부의 수정의견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제시한 그 안에 대해서도 기재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전체회의에 잠시 계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 순천 출신 소병철 위원입니다.

이 하천법 관련해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리적으로 차관님께서 지금 기재부에서 수정의견 낸 것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취지에는 국가에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그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조항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책 등 강구해야 된다가 아니라 필요한 시책, 그러니까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시책을 강구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차관님,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소병철 위원 그래서 이 조항의 성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차관 임상준** 그렇게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거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신 거라서요.

○**소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법리에 대해서는 다 위원님들이 각각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하천을 이미 물류, 관광사업 이런 걸로 다 활용을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지 않습니까? 차관님,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소병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지금 이게 반드시 잘못됐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게 환노위에서 통과될 때 여야 간에 여당의 국정과제인 환경영향평가법, 화학물질 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이렇게 묶어서 지금 민주당도 법안 처리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큰 틀에서 그렇게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위원님들끼리 그렇게 말씀을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이 지금 4개가 다 같이 패키지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시차가 있어서 화관법하고 화평법만 먼저 본회의를 통과한 거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소병철 위원** 그렇게 되면 환노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합의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게 돼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률적으로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재고를 해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것이 지금 필요한 시책이라고 해 놔 버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무슨 등 필요한 시책’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의무성이 강하게 부각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시책’ 이래 놓으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시책을 수립 안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이 선언적인 조항이니까 법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두 번째는, 여야 간에 환노위 상임위원

회에서 함께 패키지로 처리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법리적으로 결정적인 하자도 없는데 이 법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위원** 지금 화관법하고……

○**소병철 위원** 화관법, 화평법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정점식 위원** 그거는 지난번 본회의에 통과됐지요?

○**소병철 위원** 2개가 통과됐지요.

○**정점식 위원** 그러면 일단은 말씀하신 그 15항, 16항을 함께 계류를 시키면서, 만일 그게 맞다면 함께 계류를 시켜 가지고……

○**소병철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정점식 위원**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요.

○**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하천법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정부안이 아니고 의원 입법이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환노위 개정안은, 하천의 본래의 기능 유지관리는 국가하천은 환경부가 또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환노위 개정안은 나아가서 하천부지를 공원이거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상정하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환노위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정면 배치되는 거예요. 하천의 부지 활용 방안은 이게 지방사무로 돼 있고 지금 기재부의 예산 관련 정책들도 다 그렇게 배분을 해 가지고, 분류를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래서 이거는 개정안 자체는 지방자치법 위반…… 위반이 아니고 지방자치법과 상충될 여지가 농후하고. 그다음에 기재부 수정의견은 이거는 또 하천법에 거의, 그러니까 환경부가 국가가 하천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계곡이나 이런 데 불법사항·행위 이런 걸 근절시켜야 한다 이것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책무가 있는 게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또 지방하천은 지방에서 이렇게 되는 거

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적극적 행정, 공원시설, 체육시설을 만들자고 시작한 건데 지금 와서는 이게 또 기재부 수정안은 여기서 안 맞아요. 환노위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위원장 김도읍** 지금 기재부 수정안은 환노위 개정안의 취지와 안 맞고 이런, 둘 다 지금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그래서 이 법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소위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김영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아니, 잠시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고 환노위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상충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고 사실상 상충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재부 수정안은 이게 지금 환노위 개정안하고는 취지가 안 맞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회의에 계류하자고 하면 전체회의에 계류하겠는데 이런 본질적으로 개정안, 수정안이 다 각자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내용이 전혀 다른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간사님들 전체회의에……

○**소병철 위원** 전체회의에 계류하지지요.

○**위원장 김도읍** 박범계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십시오.

○**박범계 위원** 조금 늦게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사무다, 여가활동 공간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국가의 어떤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과 상충된다는 그런 해석이십니까?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그렇게 기재부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것 꼼꼼히 한번 읽어 보세요. 지금 지방자치법 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지금 하천법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것처럼 법률에 국가사무로 규정을 하면 지방자치법의

‘그러하지 아니하다’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 아이고……

○**박범계 위원** 아이고가 아니라 완전한 문리해석이에요, 완전한 문리해석. 이것은 유추해석도 아니고 완전히 그렇습니다. 이것 뭐가 상충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하천에, 종전에 지금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원이 들어갈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해는 돼요. 그렇다고 이 규정, 원래 환노위에서 통과돼서 온 이 규정대로 한다 하더라도 당장 시급하게 기재부가 하천 관리를 위해서, 특히 시민들의, 국민들의 하천을, 어떤 유희시설을 휴양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위해서 당장 예산을 투입해야 될 고도의 긴급의무가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법률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시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박범계 위원** 제가 경험한 우리나라 기재부의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그동안의 수많은 관례를 보면 이것보다 더 직접적인 조항을 뒤도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예산 투입하는 것에 대해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이 정도의 추상적 조항 가지고 지방하천에 국가인 기재부가 예산 투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제가 보기로는. 그냥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기에 때문에 그냥 안 하고 싶어서 잡는 거라고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사무와 상충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다른 법률에 그런 예외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이 해석으로 충분히 이 하천법 개정안이 상충되지 않고 모순되지 않고 부합한다, 얼마든지 조화롭게 규범적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이나 기재부 수정의견을 보면 이것은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 점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환노위에서 통과된 이 개정안의 취지와 지금 기재부가 수정의견을 낸 것은 앞뒤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의 수정의견을 낼 만한 그 범위를 저는 일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통과된다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당장 기재부 예산이 바로, 전국적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기재부 예산이 바로 투입된다라는 그러한 고도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다만 앞으로 치수를 함에 있어서 주로 안전 위주의, 치수 위주의 국가가 하천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시야를 넓혀 가지고 하천이, 우리나라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하천을 국민친화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어떤 환경이라든지 레저라든지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고도 산업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수준에서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소위로 가자라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말씀이고, 그것은 아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 제가 들어올 때 간사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고도로 높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니까 또 위원장님도 그런 지적하시니까 글썽요, 한번 더 그런 측면에서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더 논의할 수는 있지만 소위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박범계 위원님, 누가 발의했기 때문에 이 법이 안 된다……

○박범계 위원 그것은 제 해석이니까.

○위원장 김도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경륜이 있으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소위로 가면 하지 말자는 거라 그러면 여태까지 민주당에서 소위에 보낸 것 다 하지 말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리고 이 법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절실합니다. 저는 지금 제 지역이, 제 지역을 감싸고 낙동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쪽 낙동강, 저쪽 낙동강. 하천부지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박범계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차관님, 낙동강변의 하천부지에 체육시설을 만든다 그러면…… 하천법은 환경부 소관 법이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하천법 안에 그 체육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도록 해 놓으면 그 체육시설들 관리·운영하는 것은 환경부 소관입니까, 문체부 소관입니까?

○환경부차관 임상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요. 하천법에 이 내용

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자, 유상범 위원님 먼저 손 드셨는데.

○김영배 위원 제가……

○유상범 위원 제가 먼저 들었어요.

○위원장 김도읍 아니, 먼저 들었어요.

○김영배 위원 예.

○유상범 위원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의 탁월한 법률 해석 일면 타당하기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지방자치사무라고 지정을 하고, 그러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규정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특별한 예외적인 구체적 사안의 경우에는 국가사무로도 바꿀 수 있다 이런 규정이지 지금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 문구로서 여가활동 공간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국가가 강구하여야 된다고 해석이 되는 순간부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하천에 있는 여가활동 시설의 설치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분에 대해 설치 의무가 있잖아요. 설치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지금 그게 부실하면 국가가 이 법에 있으니까 이것 환경부에서 하세요라는 근거 규정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입법의 형식도 부적절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혼선 또 주민들 입장에서 만일 국가에 요구했을 때 국가가 안 나서게 되면 국가는 책임 방기 아닌가요? 환경부에서는 그 생각을 해 보셨어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유상범 위원 생각 안 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결국 예산의 문제, 어떤 근거 조항 하나를 남김으로써 앞으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이것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차관님은 A도 오케이, B도 오케이, 좀 애매한 입장으로 자꾸 가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말이 조금 많아진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미 박범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위원장 김도읍 소위로 가자고요?

○유상범 위원 소위로 보내면 안 한다고 또 한 말씀 할 것 아니에요? 일단 계류를 하시지요, 전체회의에.

○위원장 김도읍 예.

일단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차관님, 그러니까 이 하천법 제3조가 ‘국가 등의 책무’라는 조항이잖아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김영배 위원** 그런데 이 책무 조항 1항에 보면 국가가 치수·물환경…… 2항에 있는 이수·치수·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게 1항에 그것을 써 놔놓았어요. 1항이 2023년 1월 달에 개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여기 보면 기후변화 이야기도 추가가 된 것 같고.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김영배 위원** 그래서 물관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어떤 책무를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동시에 2항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런 이수·치수·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변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국내외적 조건으로 볼 때 기본적인 활용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조항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방자치법상의 의무, 지방자치법상의 구조하고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사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지방자치 고유사무도 있지만 국가위임사무도 있고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대리인으로서의 기능도 동시에 하면서 자치 고유사무도 수행을 하는 단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국가의 의무, 책무로 되어 있는 조항의 내용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경우에 법에 규정하거나 사무를 위임하거나 하게 되면 그것을 다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김영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2항의 규정이 지방자치법의 정신과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해석이고 잘못된 해석이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까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 규정 말고도 이런 하천구역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일이나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변화나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도

록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국민의 여가활동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그리고 그게 앞에 ‘어떤어떤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는 조항이라고 보고.

여기에 보면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이것 시책이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된단지 무슨 예산이 얼마 들어가야 된단지 이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김영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부처나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이 일이 그 업무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는 규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법은, 이 조항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맞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이 기본 수정안을 동의해서 환노위에서 넘어왔을 때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항의 취지에 동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재부가 이런 의견을 냈을 때도 그 우려를 들어 보니 그 우려도 일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법사위 내에서 위원님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저는 뭐 하여튼 계류하자고 아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또 추가 논의를 할 때 이것은…… 저는 당연히 이 조항, 법조항에 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감안해서 논의했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영배 위원님, 지방자치법과 상치된다고 주장한 부분이 김영배 위원님 주장하고는 안 맞지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면 좀 과도한 거지요. 그렇지요?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김영배 위원** 잘못 판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위원장 김도읍** 아니요.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김영배 위원** 제 견해는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도읍** 조수진 위원님.

○**박형수 위원** 아니, 제가 먼저……

○**위원장 김도읍** 조수진 위원님 먼저.

○소병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위원장 김도읍 예.

○소병철 위원 소병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조예가 깊으신 의견 충분히 다 일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아까 정점식 간사님께서 제안해 주셨듯이 저희가 환노위에서 여야간에 합의해서 관련 법들을 함께 연관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다는 그 합의 또한 존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정점식 간사님은 확인이 잘 안 되신 취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정점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앞으로 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줄거리는 충분히 다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정점식 간사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지금 16항에 대해서도 저도 여러 가지 발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뒤에 있는 법들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5, 16항은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 놓고 다음번에 환노위에서 여야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확인한 뒤에 다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건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일단 그래도 발언 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조수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조수진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하십시오.

○조수진 위원 조수진 위원입니다.

차관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하천관리 기본 목적이 뭐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수해 방지가 제일 큰 목적입니다.

○조수진 위원 예, 바로 수해·재해 예방이 가장 큰 겁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그렇습니다.

○조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조수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해·재해 예방은 더 중요해졌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조수진 위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양천갑 같은 경우에도 안양천이 바로 옆인데요, 작년에 안양천 정비에만 국비가 투입됐어요. 그게 바로 그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수해·재해를 예방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조수진 위원 그것 한 가지하고요.

그리고 지금 법안을 보면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가활동 공간 등을 조성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이것도 모순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임상준 그런 우려가 여러 번 제기됐었고요, 상임위 과정에서도.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의를 해 주셔서 이런 수정 대안이 온 겁니다.

○조수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차관님이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하천관리 기본 목적은 수해·재해 예방이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방이 더 강화되는 거지요. 강화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국민의 여가생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라는 거지요.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조수진 위원 그런 말씀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가활동 공간 설치하는 어디가 하지요? 지자체가 하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조수진 위원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되는 것과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것이 상충되지 않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대표발의하고 어느 당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가 해야 될 일,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 상충되는 이런 법안,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혼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이 시대 변화의 흐름을 얘기하셨어요. 여가활동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대 변화의 흐름에서 중요한 것 바로 기후변화라는 거예요, 기후변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하면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조수진 위원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천관리의 기본 목적 부분, 국민의 안전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하면 저는 이것은 소위에서 이 법안을 좀 더 깊이 있게 처음부터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도 저는 정말 유감입니다. 이것은 상임위 차원에서 법사위로 넘길 때 정말로 적극적으로 토의해서 자구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법안의 모순점이라든지 이런 게 없게끔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유감이고.

저는 소위로 보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결정의 뚫은 위원장님이시지요. 그러나 다만 환경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관련 상임위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차관님, 지금 차관님 답변이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변하시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부가 기본적으로, 지금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지방사무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로 규정한다 그러면 국가사무로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정부는, 환경부는 무슨 판단부터 해야 되냐면 이 사무를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부터 명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면서 이렇게 해도 ‘그것 가능할 것 같다’, 저렇게 얘기해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안 되지요.

기본적으로 지방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하천관리 업무, 이수지요. 이수 부분이 국가사무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환경부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토부나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의 입장에서 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규정에 의하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선언적 규정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판단의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규정을 해 봤다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필요할 경우에 시책을 마련하니까 선언적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의 형식을 보면 ‘국가와 자치단체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언적 규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회의에 계류하든 소위

에 계류하든 환경부의 입장부터 명확하게 논의를 해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회의 때까지 명확하게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임상준 위원님, 이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논의됐고요. 큰 틀에서의 하천법의 기본 목적이 재해 예방이지만 그걸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의 일부 조항은 이 정도 규모로, 이 정도 조항으로 신설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동의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에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래요, 이해를 합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다음 회의까지는, 환경부의 입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사무로 이걸 이양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6항에 대해서 지금 소병철 간사님께서 이것도 계류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률은 뭐 하는 법률입니까? 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 그걸 복구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면제하자, 신속하게 복구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박형수 위원 그런 법률인데 이것을 계류한다거나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데요, 차관님은?

○환경부차관 임상준 저희는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법은 재해를 당한 그 지역을 빨리 개선 복구를 시켜서 앞으로 다가올 수해를 예방하는 차원의 조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오늘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형수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것은 통과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여름 수해 때 우리 지역도 많은 피해를 당했어요. 충남·충북 지역도 많은 피해를 당했지만 경북의 예천·영주·봉화 지역이 많은 피해를, 인명피해도 있고. 지금 하천이 지난번 폭우 때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복구하려고 그러면 이런 조항들이 걸려 가지고 아직까지 착수도 못 하고 있어요, 공사에. 그런 상황에서 올해 여름에 다시 또 이런 폭우가 온다고 하면 그때까지도 이런 것에

묶어 가지고 개선 복구를 제대로 못 해 놓는다고 그러면 국가나 자치단체 다 국민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은 빨리 통과시켜서 그래서 수해로 인한 재해복구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은 환경부?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위원장 김도읍 박범계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박범계 위원 더 자세히 읽어 보니까 기재부 수정의견은 최초 원안, 환노위 개정안하고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수정의 범위, 골조를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제대로 짚었어요. 이것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수를 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도록’ 이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박범계 위원 그런데 원안과 개정안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천의 주요 목적이 치수인 것은 분명하고 조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으로부터 안전 이런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수가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수도 하나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하천이라든지 하천변이라든지 또는 하천 그 자체라든지 이런 것이 전국의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얼마나 이용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사용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원래의 고유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친화적으로 이용하라 하는 게 원안과 환노위 개정안의 취지인데, 기재부 수정안대로 가면 이것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완전히 취지가 몰각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용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완전히 뱀 꼬리가 되는 거고. 그렇지요? 사자를 그리다가 호랑이를 그리다가 고양이를 그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이것은 법을 통과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기재부 수정의견은.

그래서 낙동강변을 많이 두고 계신 김도읍 법사위원장님, 제가 볼 때 개정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이 부분을 우리 여야가 같이 설득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 기재부안대로 가면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그런 법안이 됩니다.

○위원장 김도읍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 소병철 위원입니다.

평소에 박형수 위원님이 법리에 대한 말씀하면 항상 제가 경청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2개를 꼭 짚어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사실 이런 논의를 계속 들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이미 다 나와 있는 테두리 아니까 다시 반복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임 차관님이 여야가 환노위에서 이 법에 대해서 소위, 전체회의에서 다 치열하게 논의를 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들이 말씀한 내용들이 이미 환노위에서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노위의 여야 위원들이 합의한 내용을 우리가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정점식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박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재반박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결론은 못 내고 챗바퀴처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16번 항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말씀, 제가 분명히…… 앞의 부분 말씀을 박형수 위원님이 생략을 하셔서, 이 16번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환노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존중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고 마침 정점식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15, 16항을 전체회의에 계류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 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 이 뜻이지요.

○소병철 위원 그런데 박형수 위원님께서 좀 참선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이 소병철 간사의 논리에 대해서 일침을 놓고 싶으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정점식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서 15, 16항을 그렇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거듭 건의드리는데요 지금 이것 가지고 거의 사오십 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아마 논리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 2개의 법안을 계류시켜 놓으시고, 만약에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면 다음번에 다시 또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수용합니다.

그렇지만 여야가 환노위에서 합의를 했다고 하

고 이미 저희가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환노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15, 16항에 대해서는, 정점식 위원님 철회하신다는 말씀 마시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게 민주당 간사 의견입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15항은 계류하더라도 16항은 무슨 이유로 계류를 한다는 겁니까, 16항은 급한 법률인데?

○소병철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때 박형수 위원님 정확히 안 들으셨던 모양인데요.

○박형수 위원 아니, 같이 통과시켰다고.

○소병철 위원 이 법, 환경영향평가법, 화평법, 화관법, 그 4개의 법을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다 처리를 하자, 그 속에 들어 있었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박형수 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잖아요? 화평법 먼저 처리했잖습니까?

○소병철 위원 그건 환노위에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했는지.

○위원장 김도읍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법안을 처리했다 하더라도 법사위가 뭐 하는 데입니까? 체계도 보고 자구도 보는 것 아닙니까?

특히 조금 전에 제가 환경부차관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국민의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 결국은 예정되는 게 체육시설, 공원시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시설, 공원시설을 환경부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문체부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관리 운영은 누가 해야 됩니까?

○환경부차관 임상준 일단 저희 환경부에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내주는 단계까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요. 하천점용허가를 내주고 공원시설,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의 기본적인 업무가 됩니까? 그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이 하천법이 이 개정안대로 하면 본인들이 시설도 하고 본인들이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게 법체계상 안 맞다는 거예요, 정부조직법상 기능에도 안 맞고.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개정안과 기재부 수정의견도 이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엇박자를 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2소위 회부하자는 의견을 거의 안 내는 사람입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부부처 간 기능, 소관 업무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또 약간 경미하지만, 제가 법사위 이렇게 오래 했지만 법조항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은 내가 봐도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수석전문위원, 법조문에 이거 듣느니 처음입니다. 이 ‘강구하여야 한다’ 이게 지극히 정치적으로 예산심사할 때 부대의견에 넣는 용어거든요. 이게 환노위에서도 이 법안을 처리할 때 얼마나 참 고민이 깊었나. ‘강구하여야 한다’ 이런 게, 아마 환노위에도 법안 심사하는 전문가들이, 전문위원들이 계셨을 건데 ‘강구하여야 한다’ 이게 법률용어 맞나요? 이건 아니거든요.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전체회의에……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강구하여야 된다’가 다른 법문에도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게 안 맞다는 거지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소병철 위원 그건 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견해 차이가 아니고요. 그건 안 맞다는 거예요. 연구한다는 건데, 강구한다는 것은. 그게 맞나요?

자, 어떻게 할까요?

○정점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위원장 김도읍 전체회의 계류하면 해결이 됩니까? 다음 심사 때는 기재부도 출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그리고 소관 업무도……

이화실 전문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이 소관 업무가 어디로 가는 건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간사님.

○정점식 위원 차관님, 순천만국가정원 아시지요?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정점식 위원 거기 소병철 간사님 지역구인데, 소위 수목원이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항인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정원을 특별히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특수한 조항을 뒀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항이 현재 기재부에서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소위 ‘하천부지의 공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니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영배 위원님도 동의하셨던 2항에서 국가를 빼 버리는 방안, ‘지방자치단체는’ 하는 방안 그리고 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하는 방안, 여러 방안에 대해서 정부부처 간에 협의를 빨리 좀 해 보십시오.

○**환경부차관 임상준** 예, 기재부하고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만약에 국가를 빼면 국가하천은?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지방하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점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정점식 위원님이 순천만 말씀을 하셔서 잠깐 설명……

○**정점식 위원** 그것은 칭찬하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소병철 위원** 아니아니요, 그러니까 거기 순천만법에 어떻게 돼 있는가를, 마침 잊어 버린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말씀대로 순천만, 지방자치단체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순천만정원에 대한 특별법을 하나 제가 발의해서 통과가 됐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가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공교롭게 이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 이것 지금 서로 얼마든지 공방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간곡하게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고맙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차관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면 국가는 왜 안 하냐고 그러면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강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이고, 순천만법에 ‘강구한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소병철 위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된다’.

○**위원장 김도읍** 아니, 그러니까요.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강구라는 건 뭘니까? 계속 연구한다는 것 아닙니까?

○**유상범 위원** 순천만 같은 법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

○**소병철 위원** 다른 법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특별한 경우고.

○**소병철 위원** 평창법에도 들어 있어요.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요.

○**위원장 김도읍** 그게 법이 안 맞다는 거예요. 법을 정치적으로 타협하다 보니까 강구하여야 한다는데 소관 부처에다가 ‘왜 안 하냐’, ‘아니, 강구하고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이거 정치적으로 타협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런 거예요. 강구라는 것은 법률용어가 아니에요.

15항, 16항은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박형수 위원** 16항은 왜 계속 심사합니까?

○**위원장 김도읍** 일단 잡으니까.

○**박형수 위원** 16항을 처리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위원장 김도읍** 아니요, 이것은……

박형수 위원님, 우리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이 이런저런 법을 덜을 한다, 바터를 한다 이것은 국민들 지탄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평가 뭉으로 돌리고 일단 전체회의 계류하자고 하니까 계류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안 하시겠습니까.

15항, 16항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준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환경부차관 임상준** 아닙니다.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회 제출)

1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125173)

19.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6시11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17항 군인사법 개정안(대안)부터 19항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대안)까지 3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만 제19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군인의 임용 결격 및 제적 사유에 음란물 유포죄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 확정 후에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다른 법률에서 인용한 용어를 정확하게 정비하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추천받아 수습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수습기간 동안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김선호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차관님, 19항의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행안부랑 토론을 통해서 수정을 하셨네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수정 다 협의됐습니다.

○유상범 위원 활동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임의규정으로 하고 활동위원회의 기간은 5년으로 제한하는, 이렇게 협의를 다 하신 거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다 맞았습니다.

○유상범 위원 전문위원도 이것 확인을 한 겁니까?

○전문위원 한석현 예, 자료 깔려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차관님, 17항인가요? 스토킹범죄라든가 음란물 유포죄 벌금 100만 원이요. 100만 원으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게 지금 현재 국가공무원법 관련된 규정에 같은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준하는 내용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 1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통계를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어떤 통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원 위원 벌금 100만 원이 매년 혹은 지금까지 공무원에 임용하려는 젊은 친구들에게, 1년에 한 몇 명씩 선고를 받는지 또 그 내용은 어떤지 한번 보셨나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현재 거기에 대한 통계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김승원 위원 100만 원이면 사실 중한 범죄는 아니거든요, 차관님도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0만 원으로 하면 청년 때 혹은 실수로 인해서 한 것이 어떤 결격사유, 그 청년의 인생을 또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할 수도 있어서 그런 걸 한번 좀 살펴보시고 하는 것은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일단 저희들이 음란물 유포죄라든지 스토킹범죄 같은 것은 군 장교로서 임용되는 것의 심대한 결격사유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어떤 법규를 정한 게 국가공무원법에서 22년도에 관련된 내용의 법규와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됐기 때문에, 동일한 적용 범위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 적절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용됨에 있어서 어떤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라는 것에 대한 통계라든가 또 어떤 내용이 100만 원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좀 중하지 않은가, 너무하지 않은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자료 같은 것들이 소위에서, 아니면 국방위에서 다루어졌으면 저도 그냥 흔쾌히 동의를 하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논의가, 토의가 좀 있었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런 법규가 기존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사항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이 발효되고 유효화되면 적용 간에 나타나는 것들을 저희들이 잘 통계화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면서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아무튼 그러면 이거 한번 통계자료를 보셔서 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전체회의 계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꼭 보고를 하셔서 그런 같은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위원님 그러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 잡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9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6시18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20항 아동복지법 개정안(대안)부터 24항 식품위생법 개정안(대안)까지 5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만 제23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박동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보호자 의견 청취 의무가 없는 보호자의 범위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 등을 추가하고 현행법상 ‘아동학대행위자’ 규정 중 일부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신고하면 조사 등이 이루어지는데 개정안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조사 등을 받기만 하면 아동을 보호자와 장기간 분리하는 분리조치를 함에 있어서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게 되어 보호자의 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안 제15조제5항과 관련하여 신고의 정당성 유무에 대한 판단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있다는 사유로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되기만 하면 보호자의 의사를 묻지 아니한 채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는 보호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그 적절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개입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어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되는 자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한지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국보육진흥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 등을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하고 위탁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와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한국보육진흥원에 대한 보육자격증 교부 등 업무의 위탁 근거를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이 보육교직원의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납부받은 수수료는 보육자격증 교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어린이집 평가 업무는 현행법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유업무라는 점에서 진흥원이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위탁 근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제정법으로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등에 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도록 의료 등의 통합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조사, 퇴원환자 등의 연계, 종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제공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의료 등의 통합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법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 제10조 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하여 직권으로 통합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 정보 주체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 전에 당사자에게 통합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복지부는 그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내용을 주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인정 및 안전성 심사 결과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18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안전성 심사 결

과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성 심사 결과에 따른 승인’이라고 표현할 경우 해당 승인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의 승인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으므로 안전성 심사 결과로 통보받은 안전성 승인을 의미함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기일 복지부1차관님, 오유경 식약처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차관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이 이견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대법원하고는 협의를 해 보셨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법원행정처입니다. 협의가 아직 덜 된 그런 상태라는 말씀 드립니다.

○박형수 위원 아직 덜 됐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아직 덜 됐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전체회의 계류하면 다음 회의 때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전체회의 계류 의견.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22항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구 설치 권한과 관련해서 이걸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차관님, 들으신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행안부에서 20조(통합지원협의체) 그리고 21조 전담조직에 대해서 지금은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 수 있다’라고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고요. 그건 사실은 지난번에 상임위 통과 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단 ‘둔다’로는 두되 행안부 의견을 받아서 이런 자세한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래서 그 수정안이 제시가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상임위 통과가 됐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렇게 해서 상임위 통과가 됐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왜 또 이런 의견을 제시했지?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때는 상임위 판에서도 제시가 됐었습니다.

○정점식 위원 전문위원,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이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간사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상임위 오기 전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는 ‘둔다’도 있었고 ‘둘 수 있다’도 되어 있었는데요.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 여러 가지 통합돌봄협의체라든지 전담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둔다’로 저희가 그때 결정을 했었는데요. 그때 마침 행안부에서 ‘둘 수 있다’라는 것하고 또 한편으로는 ‘둘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례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둔다’는 건 그대로 상임위에서 결정을 했고 다만 행안부 의견에서 이런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 같이 반영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대안이 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도읍 예,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차관님, 보육진흥원이 설치가 된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서 보육교직원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지원 자체를 보육진흥원 업무로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셨네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의결이 됐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하면서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및 평가는 원래 복지부장관의 고유업무다, 그래 가지고 다시 위탁으로 재규정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정리가 된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을 수용하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장하고 발의 의원들 또 간사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쪽에서 다 동의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복지상임위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검토될 만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장관의 고유업무를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보육진흥원 쪽으로 넘기는 규정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저희 상임위가 논의를 할 때, 사실은 자격증 교부하고 평가인데요. 여기에서 ‘보육진흥원의 평가·지원’이라는 단어가, 두 글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진흥원이 지원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느냐라면서 위탁을 빼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건 고유업무기 때문에 법사위의 의견처럼 위탁이 맞겠다라고 수정해 주셨고 저희도 거기에 동의하고 상임위에 그 내용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수정의견 반영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 차관님!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소병철 위원 영유아보육법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안들, 지원을 예를 들면 위탁으로 하는 것이 업무 성격상 맞는지 지금 일부 수정안을, 복지부하고 전문위원이 의논해서 수정안이 나온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건 충분히 지금 다 검토되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소병철 위원 본안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어만 정리하신 거네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소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점식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전문위원 한번 말씀……

○전문위원 박동찬 말씀하신……

○위원장 김도읍 지금 위원님들 오시는데……

박동찬 전문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점식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박동찬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은 지금 20조, 21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둔다’라는 것은 그냥 변함이 없이 두는 걸로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차관님!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정점식 위원 ‘둔다’라는 조항에 대해서 행안부가 동의를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행안부는 계속 그 의견을 가지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내용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논의해 통과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일단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행안부 의견 확인하기 위해서……

○소병철 위원 차관님, ‘둘 수 있다’, 아까 처음에는 그것이 수정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정 위원님이 확인하니까 수정이 안 됐는데 ‘둘 수 있다’ 정도로 하면 복지부에서 뭐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당초에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섯 분들의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두 분 정도는 ‘둘 수 있다’, 나머지는 ‘둔다’로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지역사회통합협의체하고 전담조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강력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더라도 의견을 주셔서 가지고 하게 된 거였고요.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둔다’를 ‘둘 수 있다’라고 요청이 왔고요. 또 하나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이것은 서로 합의를, 상임위 논의를 해서 ‘둔다’하고 ‘조례로 정한다’ 그런 내용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둔다’라고 강행규정을 행안부가 동의를 했는데……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명확하게 동의한 것은 없습니다.

○정점식 위원 조금 전에 소병철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둘 수 있다’라고 조항을 수정하면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시면 그것은 아마 저희가 상임위 의견을 한번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일단은 22항도 전체회의 계류……

○위원장 김도읍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22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차관님, 오유경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고맙습니다.

2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1)

27. 문화재영향진단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032)

2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 관광위원장 제출)

(16시31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25항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부터 제29항

문화재보호법 개정안(대안)까지 5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화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 의사일정 제25항,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사찰 내 미허가 또는 미신고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등재 관련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세워진 미허가 또는 미신고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건축면적과 대지면적의 산출기준은 건축법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명시할 실익이 크지 않으며 건축위원회가 사용승인을 심사할 때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문화재영향진단법안은 국가유산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문화재청장과 사전영향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지표조사 및 매장유산 유존지역 협의, 영향검토 절차를 국가유산 영향진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사전영향협회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약식영향진단의 대상,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하위법령의 종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표조사 및 매장유산 유존지역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영향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서 종전의 법률이 적용되는 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사전영향협회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계획의 규모·내용·시기 등’은 광범위하고 불확실한 표현으로 해당 개발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

며 진단보고서의 제출, 보완 및 반려, 조치결과 보고 등의 경우 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행정상 불필요한 절차,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이를 동시에 제출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또한 행정절차상 진단보고서의 반려 전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진단보고서의 반려 사유는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혹은 심각한 결격사유에 한해서 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진단보고서의 보완요청 횟수 및 검토기간 등을 환경영향평가법령에 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문화재청은 이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제29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정점식 이화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전병국 문체부1차관님, 최응천 문화재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김승원 위원 27항 법안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국가유산 인근 지역이라고 했는데 대략 거리로 기준을 삼으시는 겁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꼭 거리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되는 지구가 있을 거고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해당이 되는 세계유산지구가 있을 건데 이것이 사실 일부러 이원화된 법률을 하나로다가 체계를 합치는……

○김승원 위원 그러면 지정된 구역과 인근이라고 그랬는데 인근이라 하면 그 안을 뜻하는 것인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그렇지요. 저희 구역이 설정된 범위까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화성 같은 경우는 반경 몇 킬로미터 또는 몇백 미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규제의 범위를 조정하는 그런 것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 보존지역.

○김승원 위원 그러니까 500m면 500m, 200m면

200m 그 안이고 바깥쪽은 크게 영향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그렇습니다. 그건 영향에 관계없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다음에 대규모 개발계획이라 하면 최소 어느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그게 저희가 3만㎡로 일단 규정을 하고……

○김승원 위원 3만㎡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3만㎡인데요……

○김승원 위원 3만㎡면 1만 평……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김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영향협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해서도 하셨는데 여기 또 어떤 위원회를 두시나요, 평가 위원회라든가 심사위원회라든가? 민간이 하시는지 아니면 문화재청 자체에서 하시는지?

○문화재청장 최응천 따로 별도 위원회는 없고요. 그것이 문화재위원회, 지금 저희 하고 있는 그 위원회 그냥 그대로 심의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적분과위원회라든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국보나 보물이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때 만든 위원회가 있고 별도의 위원회는 두지를 않습니다.

○김승원 위원 별도 위원회를 더 두시는 건 아니고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또 법의 취지에 보면 법을 일원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면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예컨대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면 사업시행자들은 기간도, 시간도 중요하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단축될 수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단축될 수가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유상범 위원님 먼저 하시고 소병철 간사님 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유상범 위원 며칠 만에 또다시 보게 되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유상범 위원 평창에서 뵈고 또다시 뵈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올림픽은 지금 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측하지 못한 한파가 계속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위, 강원도 등이, 지자체 등이 최선을 다해서 제설작업 등을 추진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국가적으로 챔버리 트라우마가 워낙 크니까 철저하게 안전 그리고 원활한 경기 운영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그렇게 진행될 걸로 확신합니다.

○유상범 위원 26항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장동혁 위원께서 법규정 형식이 좀 과도하다 그러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고, 두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작업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조치 의무 부과 조항 과연 필요하나 또 하나는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재정지원 배제하는 문구 이걸 좀 지나치게 과도한 것 아니냐 지적을 하셨는데 정리된 것은, 그러니까 성폭력 예방조치 의무 부과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미사용 시 재정지원 배제 문제는 사용하는 경우에 재정지원을 우선 고려한다는 조항으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을 하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삭제를 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에 행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으로 이 부분은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상범 위원 규정 형식은 그와 같은 방식이 훨씬 더 정확한 그리고 제도를 활용하는 데서는 훨씬 더 적합한 방법이거든요.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다 협의가 끝난 것인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국토부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다 협의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별도의 이의 제기나 그런 것……

○문화재청장 최응천 국토부에서 요구한 내용도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 문구에 대한 조정이고요. 명확히 해 달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저께까지 저희가 다 완료를 했고요 합의를 다 마쳤습니다.

○유상범 위원 청장님께서 27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네요, 제가 묻기는 29항을 물었는데.

○문화재청장 최응천 죄송합니다.

○유상범 위원 여기 저희한테 수정사항 보고가 왔는데 이 조항 내용은 국토부랑 충분하게 협의가 다 된 거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조금 전에 27항도 말씀을 하신 거지요?

○유상범 위원 29항을 물었는데, 27항도 같이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27항에 대한 수정사항이 다 배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소병철 위원입니다.

앞서 유상범 위원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법에 대해서 장동혁 위원님과 제가 같은 취지에서 의견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성폭력 예방조치 의무 부과조항은 유지를 하되 관련 기관에서 성평등센터에서 온라인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렇게 좀 보완을 더 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재정 지원 배제는 이 법의 명칭이 진흥에 관한 법률인데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고 문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똑같이 인식하시고 해당 문구는 삭제하되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진흥하는 쪽으로 바꾸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채택을 했을 경우에 행정적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식으로 바꾼 겁니다.

○소병철 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배부해 주신 수정안이 그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전문위원님도 다 검토가 됐지요?

○전문위원 이화실 예, 확인을 했습니다.

○소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담입니다만 문체부 차관님, 여담은 아니고 국가하천부지에 국가가 예를 들어서 공원시설을 한다 그러면 하천법에 그게 들어가면 환경부 소관입니까, 문체부 소관입니까? 공원시설, 체육시설을 문체부가 관리 운영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법적 규제 부분은 저는 하천법에 따라야 될 것 같고, 다만 그 시설을 활용할 경우에 그런 법은 체육시설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양쪽이 다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이게 하천법에 체육시설, 공원시설을 국가가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 제가 볼 때는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도 명확히 해야 되고, 국가하천인 경우에는 이게 환경부가 소관을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아까 논의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 부분도 아마 차관님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 문제는 고민이 돼야 될 부분 맞지요, 하천법에 문체부의 의무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소관 부서가 있고 또 그 관련해서 지원 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 직접적인 소관하는 부서하고 관련, 관계부처라고 보통 표현합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역할과 재정 지원 차원이 좀 다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25항, 28항, 29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6항, 27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청장님은 요즘 바쁘시네요.

국토부차관님, 회의장 환기도 좀 시키고 잠시 한 10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약 20분가량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0.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재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38)

3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9)

32.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6)

3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5.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30항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부터 38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대안)까지 9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만 37항, 38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

36항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계획, 시행절차,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11조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의견 미제출 시 협의 간주 등은 행정기본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되 행정기본법과 다른 내용에 한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7조와 관련하여 재정부운용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개별법이 아닌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점, 특별법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우회 요구가 확산되는 경우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점, 다른 지역 또는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포함하여 자동차 자기인증을 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매매업자 및 매매 종사원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자동차 침수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안 제31조제6항은 결함이 추정되는 사고에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 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현행법상 대통령령에 규정된 인명피해 발생 교통사고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는바 해당 사고를 본문에 예시하고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기준 결정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 및 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기준 결정 시 양 부처 간 사전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 이것이 침해사고에 해당하면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공유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사일정 31항, 33항, 34항, 35항 등 4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32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진현환 국토부 1차관님 또한 30항 심사와 관련하여 최한경 기재부 재정관리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최한경 국장님!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최한경 예.

○정점식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30항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 관해서 기재부가 소위 예타 면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면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인데 또 반대 의견을 밝히는 이유가 뭔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최한경 임의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입니다. 달빛철도 건설에 관련된 특별법이고요. 다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나 다른 조항에서도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임의조항에 들어간 내용도 특별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일종의 강행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재정법령은 국책사업이라도 예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건에서는 임의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나니까 이게 기본적인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벗어난다라는 그런 취지인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최한경 예, 맞습니다.

○정점식 위원 지금 이것 외에 특별법으로 인해서 가지고 예타 면제 임의규정이 규정돼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최한경 예,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7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도 29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지금 달빛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으로는 규정이 돼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최한경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게 한 44개 사업 정도 되는 모양이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최한경 맞습니다.

○정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드론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31항인가요? 드론공원을 만들면 그쪽으로 많이 오실 텐데 그러면 많은 수의 드론이 한꺼번에 비행이랄까요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 예방 같은 게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드론공원이 국민들의 취미나 레저활동 장려를 위한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당 지자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정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런 것은 시행령으로 규정하시나요, 아니면 지자체에 그냥 맡기시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현재는 별도로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은 없고요 지자체에 맡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드론공원은 어쨌건 군 비행장이라든가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리가 이격된 곳에 지정한다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당연합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많이 쓰는 도시공원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다시 한번만요. 도시……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도시공원. 일반 국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도 다중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제외했고, 대개 외곽 지역이라든가 왕래가 좀 덜한 곳에 할 텐데 그러면 이제 드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교육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럴 텐데 그것 관련된 안전사고는 지자체가 규율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겠다는 취지이신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것까지 좀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드론이 지금 몇 km까지 조종할 수 있습니까, 최대?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125kg까지 드론이……

○김승원 위원 그것은 중량인 것 같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김승원 위원 거리요, 거리로서는?

거리 1km 범위, 2km 범위, 무선으로 이렇게 드론 조종할 수 있는 거리가 몇 km나 됩니까, 요새 기술에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그것은 이제 성능에 따라 다른데요.

○김승원 위원 물론 그러겠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눈에 보이는 가시권 범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아무튼 잘 좀 규율을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30항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관련해서요.

물론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이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제도를 마련해 놓은 취지가, 국가의 재정을 허투루 쓰지 말자는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인 특별한 사업이나 또는 지금 이 철도와 같이 영호남 화합을 위한 이런 철도의 경우에는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철도라는 것이, 철도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습니까라는 사람이 적고 왕래가 적은 곳은 기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 보면 경제성 평가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 왕래도 많아지고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인 법안으로서 예타 면제에 관한 임의규정을 넣어도, 이 건에 한해서 이렇게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38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8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에서 이건을 제시를 해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하던데 수정안이 제출돼 있는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제시를 해서 의견을 100% 수용해서 공무원 의제 규정에 형법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 대상 위탁기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것 수정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완료했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차관님, 지난번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과태료 규정들이 너무 난잡하고 이것 좀 정비가 돼야 된다고 지적을 제가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다시 한번 하시라고 했는데, 여기 올라온 수정사항 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제 상당수 정비가 된 것 같아요, 규정 형식에 맞게.

이것은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충분히 다 협의를 마친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의원님실하고도 협의를 완료했고 또 전문위원실 그리고 양당 간사실, 위원장님하고도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쪽 읽어 보니까 그나마 법률 같은 느낌이 좀 납니다. 앞으로 나중에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런 게 있을 때는, 입법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각 조문의 규율 형식 이런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국회가 만드는 법이 어디 지방자치 조례보다도 못한 느낌이 나서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처 내에서도 변호사나 법률전문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유상범 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도 일부 자구 수정을 좀 한 게 있는데 그 부분 확인을 다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동의하신 거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동의합니다.

○유상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 순천 출신 소병철 위원입니다.

역시 우리 박형수 위원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경청할 만한 그런 논리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달빛철도 관련해서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국내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 경제화의 척추뼈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지금 누구도 그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 두 번째 임지를 거창지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88년도에. 그런데 그때 88고속도로를 검사가 하나라서 토요일 날 밤에 당직 마치고 가면 광주까지 가는 동안에 차를 10대도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대구고검장 하면서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깜짝 놀란 게 정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나 이런 SOC들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당과 야당이 일치된 의견으로 여러 가지 정부에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박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동서 화합 그리고 또 남북 간에 새로운 경제 발전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지금 이 법을 지역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 다 자료가 갔을 겁니다. 여기 지금 대구, 광주에서 만들어서 보내준 자료를 읽어 보면 정치인들이 단순히 무슨 어떤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국가 발전에 이 법이 얼마나 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구구절절하게 이 자료에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국가 전체 재정을 운용하는 차원에서 예타제도는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되고 또 기재부에서 목소리 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야가 일치된 의견으로 더더구나 지역의, 광주 대구 경북 전남 모두 다 이 법에 대해서 목마르게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재부에서 그런 부분도 좀 크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 의견이 대부분 다 일치해서 이 달빛철도법 꼭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단순히 위원들 개개인의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해서

일치된 목소리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달빛철도법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도 위원들의 그런 마음을 좀 넓은 시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소병철 간사님께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오늘 최한경 재정관리국장도 나와 계시지만 재정 당국 입장에서, 나라 살림살이하는 입장에서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나라 살림하는데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재부 재정관리국 입장에서도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관리해야 되는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맞지요. 맞지만, 여러 가지 또 필요하다는 소병철 간사님이나 우리 박형수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한데……

최한경 국장님 고충이 많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최한경 예, 고충이 많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도 동법의 영호남 간의 지역 화합이나 상생 발전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가재정법에 규정돼 있는 예타법에 있는 근간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특정 개별 사업 분야나 특정 분야에 대한 SOC 사업들, 현재도 국회에 33개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동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나머지 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저희도 또 하나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국가 계획인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신규 노선이 44개입니다. 44개 중에서 이게 1개의 노선일 뿐입니다. 다른 노선들은 지금 예타를 마쳤거나 예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의 형평성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처럼 인구 감소지역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예타를 한다 하더라도, 이 예타제도가 19년 4월에 개편되면서 지역균형발전 부분이 상당히 높은 부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실

제 예타를 거쳐도 이 부분은 많이 반영돼서 아마 긍정적인, 그렇게 우려하실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타의 제도 틀 안에서도 동 철도 건설은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과거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비용 대비 편익만 딱 봤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최한경 예.

○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제도가 바뀌어서 정책성 평가라는 게 들어갔지요.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해법들도 나오고는 합니다. 하는데, 어찌 되었건 우리 재정관리국 입장에서는 참 고충이 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 총 261분입니까, 법안 발의에 동참하신 분이?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관리국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고충이 크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새겨 들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0항, 31항, 33항부터 36항까지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7항, 38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현환 차관님, 최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10)

40.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35)

41.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6)

4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3.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8)

4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3)

4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8.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3)

4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5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0512)

(17시34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39항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50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까지 12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50항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제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풍수해보험’의 명칭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변경하여 풍수해보험이 보장하는 자연재난의 범위에 지진재해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제명 등의 변경에 따라 하위법령을 함께 정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물 안전관리의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서 협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중 일부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점,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민간협회에서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체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소방청장 등이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 주체에 대해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 주체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31조제1호에 대하여 법무부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검토보고 송부 이후인 오늘 소방청이 이를 수용한 수정의견을 마련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등 4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40항 등 5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고기동 행안부차관님,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윤희근 경찰청장님, 남화영 소방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48항에 대해서 좀 여쭙보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해서 기재부가 지금 반대 의견 갖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소방청장 남화영 예.

○김승원 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업무의 중복 그것 하나인가요, 아니면 비용이라든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추가로 또 반대하는 이유가 있으신 건

가요?

○소방청장 남화영 지금 봐서는 업무의 중복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김승원 위원 민간협회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소방청장 남화영 아무래도 정부 정책 기조가 있다 보니까 협회 설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억제하는 그런 기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원 위원 지금 제가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소방산업기술원은 주로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소방안전원은 주로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개정법에 따라서 협회가 결성이 되면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의 개발 업무가 민간 전문업자에 의해서 같이 병행적으로, 아니면 이게 독자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민 안전에는 훨씬 좋다고 하는 그런 검토 결과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기재부의 반론은 어떠신가요?

○소방청장 남화영 기재부에서는 기술개발이나 조사·연구 업무 자체가 기존 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복된다는 얘기인데요. 저희들 소방청 입장에서는 조사·연구나 기술개발은 여러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안전관리에서 상당히 이롭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구태여 반대 명분은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업무야 여기저기서 하는 것, 그러니까 위험 안전에 대한 업무니까 그것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증이 된다면 약간 중복이 있더라도 절대적인 반대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소방청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저도 이게 위험물이 한 칠천 가지가 넘는다고 해서, 국가라든가 공공기관이 하는 그 활동 범위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이중 체크 비슷하게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소방청장 남화영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가, 협회의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위험물에 관해서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위험물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들이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안전관리도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

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우리 법사위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없으신 건가요?

○**소방청장 남화영** 예, 소방청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승원 위원** 아니, 기재부. 기재부는 안 나오셨어요?

○**소방청장 남화영** 예, 지금 기재부 안 나와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기재부와 해소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신 건 없습니까?

○**소방청장 남화영** 해소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과 협의는 진행했는데 지금으로서는 기재부에서는 기재부 의견을 꺾을 생각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기재부는 협회 자체가 성립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소방청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런데 그 이유는 업무 중복이라는 것이고요.

○**소방청장 남화영** 예.

○**김승원 위원** 그것 논의를 지금 계속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러면 이게 행안위에서 통과할 때 반대 의견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었나요? 어땠습니까? 행안위에서 이 법 개정안 통과될 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기재부가 반대 의견을 계속 냈다라든가 그 상황을 한번 좀 얘기를 해 보시지요.

○**소방청장 남화영** 그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안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셔서 가지고 여러 논의 끝에 이 법이 상임위에서 그때 의결돼 온 부분이거든요. 그때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토의가 있었습니다.

○**김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청장님!

○**소방청장 남화영** 예.

○**정점식 위원** 조금 전에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48항 법안에 관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기재부는 위험물 안전 관련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가 정부 및 공

공기관의 업무다, 그래서 민간협회가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조금 전에 김승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행안위에서 이 법안을 논의할 때 기재부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소방청장 남화영** 그 당시에는 기재부에서 직접적인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점식 위원** 아니, 기재부 의견 요청한 바 있습니까? 기재부 의견 요청도 안 했다는데?

○**소방청장 남화영** 처음에 이 법이 의원 발의됐을 때 저희들이 부처 의견 조회했을 때 이견은 없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 과정에서는 제대로 법안 자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의견 개진을 안 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행안위 상정 후에 통과되기 전까지는 소방청에서 기재부 의견 요청한 바 없이 진행했다고 지금 기재부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소위 기관 신설은 최소화한다는 게 우리 국정과제고 하니까 일단은 기재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전체회의에 계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48항 말씀이시지요?

○**정점식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50항 어디서 해요? 초고층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장 남화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소방청에서 하시지요?

보니까 법무부에서 이 규정 중 벌칙 규정에 대해서 각 행위태양별로 구별이 가야 되는데, 행위태양별 벌칙의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걸로 확인이 돼서 의견을 냈는데 다 수용을 하신 걸로 정리가 됐는데, 맞습니까?

○**소방청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3년이면 결코 적은 형량은 아닌데 3년까지 이렇게 수용을 하셨나요?

○**소방청장 남화영** 기존 있는 다른 법률에 이와 비슷한 양형이 있는데 그것이 3년 이하 징역에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어서 지금 법무부 의견은 똑같이 맞추자는 얘기였고요. 저희들은 기존 다른 법률에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똑같이 하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다른 법률에도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 규정을 또다시 여기다 3년 이하로 하는 것이 과하다. 그러면 다른 법률에 적용이 이미 다 되는 거예요, 다른 법률로도 이미 이 벌칙 조항은?

○소방청장 남화영 그런 비슷한 사례인데요. 여기같이 법을 위반한 사항이 똑같은 사례는 아니고 이와 같이 행정관청에서 조치명령을 했을 때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벌칙을 주는 부분이 다른 법률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데……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금 여기 규정한 법률이 내용을 처벌을 못 합니까?

○소방청장 남화영 그에 따르면……

○유상범 위원 기존의 법률에 의해서 이게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소방청장 남화영 여기에 보면 초고층에 관련되는……

○유상범 위원 별도의 특별 규정……

○소방청장 남화영 위반한 사항이 특별히……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특별 규정으로 정리하면서 벌칙조항을 같은 내용을 집어넣은 거네요, 그러면?

○소방청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하여튼 법무부 의견대로 수용해서 정리된 걸로.

○소방청장 남화영 예.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소방청장님.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 출신 소방청 위원입니다.

소방청장님, 요즘 최근에도 지역에서 대형 사고가 나서 온 국민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들의 규모 또 상거래 규모 이런 유통시설의 대규모 이렇게 추세가 가다 보니까 위험물 관련 또는 화재 사고가 대형으로 일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소방청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면 지난 5년 동안의 위험물 사고가 343건에 사망자만 345명 이렇게 지금 사상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나날이 이런 위험물 또는 화재, 안전사고가 대형화 또 인명 피해의 다수화 이런 현상이 벌어

지고 있는 거지요?

○소방청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지금 국민들께서 이런 위험물 사고나 대형 사고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구제도 실질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지금 국민들의 절대다수 요망이지요?

○소방청장 남화영 예.

○소병철 위원 지금 기재부에서 반대한 의견을 저도 봤습니다. 제일 문제가 중복성 부분이라서 기존에 있는 기구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소방산업기술원은 검사 업무를 지금 주로 하고 있지요?

○소방청장 남화영 예.

○소병철 위원 그리고 소방안전원은 교육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소방청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시설을 새로 신설하게 되면 사실 제일 중요한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아닙니까?

○소방청장 남화영 예.

○소병철 위원 사실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이게 지금 소방청에서 제일 주력을 했었어야 될 텐데 왜 이 부분이 지금까지 누락돼 있었을까 오히려 이런 의문을 가져 봤어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가 그걸 준비하기에 대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경제 규모가 커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런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게 된 겁니까?

○소방청장 남화영 중요한 내용이 누락됐다기보다는 그동안 관 주도형으로 그렇게 안전관리 업무를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관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영업주 스스로 자기들이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소병철 위원 소방청장님으로서는, 제가 확실한 소신을 좀 여쭙보고 싶어요.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이것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급하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조금씩 천천히 점진적으로 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소방청장 남화영 저희 소방청의 입장으로서 그런 안전관리에 있어서 이게 관에서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결국은 위험물을 직접 다루는 영업주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업을 잘 아니까 그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이번에 지방에 대형 사고 있고 나서, 소방청에서 대개 국민들한테 그런 큰 피해가 있으면 대책 같은 것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소방청장 남화영 예.

○소병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별도 대책을 발표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뭐 준비하는 게 있나요?

○소방청장 남화영 어떤 사고를 말씀하시는지……

○소병철 위원 최근에 시장 200채 넘는 상가들 소실된 사고 말입니다.

○소방청장 남화영 이번에 서천에 있는 시장 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이후로 또 별도로 안전 대책을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위험물 사고 예방에 대한 안전기술,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방청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이런 부분도 당연히 그 대책에 포함이 돼야 되겠네요?

○소방청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소방청장님!

○소방청장 남화영 예.

○김영배 위원 위험물안전관리협회가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거예요?

○소방청장 남화영 아까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정책·제도의 조사·연구라든가 안전기술 개발이 아마 주된 임무고 그 외에 다른 기관에 가는 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절 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술개발이라 함은 그러니까 돈이 되는,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돈이 되는 기술을 위주로 개발을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공공적으로 꼭 필요한 기술 위주로, 안전을 기본으로 하고 그런 기술을 하게 될까요?

○소방청장 남화영 그 기술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사업

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 사업체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영업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시스템하에서 시장성 있는 기술을 개발하자 이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건가요?

○소방청장 남화영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지 아니하고 이게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방을 위한 기술이나 정책이나 제도는 공공이 주도하고, 공적으로 그러니까 돈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고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는 안전 문제는 결국 비용으로 생각을 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거나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시장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의 그런 문제점들을 오히려 공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향이 전제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기술이, 시장성은 그다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소방청이 자기 책임을 협회로 스피아웃시키면서 책임 떠넘기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소방청장 남화영 저희들이 협회를 만드는데 저희들 업무를 협회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정책이나……

○소방청장 남화영 협회를 통해서 좋은 그런 안전에 관련되는 기술이나 또는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리어 조언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안 정책을……

○김영배 위원 아니,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별로 필요한 기술들이, 공공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이 있거나 연구과제가 있으면 보통 용역을 하거나 그러지 아니하면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을 두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하는 이유가 그게 다 이게 공공적인, 공적인 영역의 책임성 있는 업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만들거나 출자·출연하거나 어쨌든 책임 운영을 하거나 하잖아요.

○소방청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소방청이 지금 그것을 먼저 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렇게 협회를 만들어서 협회에서 그걸 하도록 하겠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정부가 해 오던 일과 완전히 반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소방청이 물론 청으로 독립을 하면서 청 중앙조직이 아직도 사실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게 사실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행안위 할 때도 그런 지적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본부 인력이나 인원이 충분히 현장 조직을 지원할 만큼의 정책적이고 그리고 기술적인 뒷받침을 할 정도의 조직이 성숙돼 있지 못한 게 사실이잖아요.

○소방청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것을 늘리는 게 우선 아닙니까?

지금 행안부차관님 어떻게 보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한테 물어보셔서……

○김영배 위원 조직 진단은 우리 행안부 몫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방청이 지금 행안위 할 때 늘 지적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전이라고 하는 게 공공적인 영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관심들이 많은데 소방청이 독립하고 나서 많이 보장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앙 지원 조직들이 상당히 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첨단기술과 관련해서 이런 소위 이야기하는 구매, 획득 이런 부분에서도 소방청이 충분하게 그런 공공시장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협회가 후순위로 따라붙는 건 저도 팬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협회가 성숙하려면 우선 중앙 조직과 중앙 단위에서 충분한 정책적 고려와 준비 그런 게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준비 조직과 지원 조직을 중앙에다가 우선 두고, 정책적으로 연구원을 두든지 하는 게 우선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우리 소방청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적 역량을 굉장히 많이 키워 가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민간 부분하고 굉장히 협업을 해야 되는 업무도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의견이 됩니까?

○김영배 위원 저는 답변이 충분히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류했으면 좋겠습니

다.

○위원장 김도읍 아니아니, 이게 그것 아닙니까?

소방청장님, 위험물 취급하는 각 분야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더욱더 업무 그 레이드 업을 시키고 이런 것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청장 남화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청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협회를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소방청장 남화영 예.

○위원장 김도읍 협회를 만들어서 법정단체로 만들어 가지고 소방청에서도 오히려 관리 감독도 잘하고 뭐 이런 것 아니에요?

○소방청장 남화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왜 이게 정부 업무를 협회에 떠넘긴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소방청장님은 답변을 딱 부러지게 안 하시고……

○김영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물어보시니까 제가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1분만.

청장님,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 답을 못 하길래 제가 답답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중앙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정책적으로 성숙하고 그다음에 협회와의 관계를 맺는 게 지금 소방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소방청장 남화영 저희들이 정부 조직에서 인력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인원은 저희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소수 인력이 모여서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현 체제에서 인력을 당장 충원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업무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는 분야가 아까 그런……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하다 그 말씀인 거지요?

○소방청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0항, 42항, 43항, 44항, 4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9항, 41항, 45항, 46항, 47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0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8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1.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48)

5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2)

5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1)

5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19)

55.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5)

56.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57)

5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6)

58.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5)

59.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6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62.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6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9)

(17시59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51항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부터 63항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까지 13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기술 수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한 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특정 유형의 단자를 기술기준으로 규정하여 강제하면 소비자 불편과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고 스마트기기 등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은 가상융합산업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개발 촉진, 표준화, 전담기관의 지정 등 관련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정안의 임시기준 제도는 가상융합산업의 혁신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재량에 따라 임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령 등의 위임체계를 훼손하는 측면이 있고 그 유효기간 및 적용 범위 등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규정 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며 또한 제정안에서 법령상 근거 또는 기술기준 등이 없는 경우 임시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가 창설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바 해당 부분을 임시기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제명과 제정안 내에서 정의되고 사용되는 용어가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가상융합세계’ 내지는 ‘가상융합’과 ‘메타버스’를 동의어로 볼 수 있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에 따라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정안 제4조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은 일정한 행위를 폭넓게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법문의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산업 지원 등의 주체, 조세 감면, 이용자 차별 금지, 개인정보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의 이견이 있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법원행정처는 메타버스기술 또는 메타버스서비스 등의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임시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권력분립주의나 포괄위임 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수용하여 임시기준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의 범위에 무인정보단말기 및 전자출판물을 추가하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 제70조 과태료 규정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유사한 규제를 두고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이중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기 위해 시행령 위임 근거를 추가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등 5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54항 등 5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박윤규 과기부2차관님, 유국희 원안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우선 일단 53항 법안 좀 여쭙볼게요.

53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 산업부와 산업계 간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걸 다 해소는 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저희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산업부 등 부처 간에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EU나 다른 국가에서도 우리 흔히 쓰는 핸드폰의 충전 단자를 자원 절약이라든지 소비자들 편리성을 위해서 통일하자라고 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 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하는 것인데 애플 같은 경우에도 15형부터는 USB C타입으로 발행을 하고 있어서 큰 현실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전주혜 위원 이게 생산방식 전환에 시간이나 비용이 좀 더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있다 이런 의견이 좀 일부 개진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소가 됐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저희들 논의 과정에서는 미국 측의 애플사 이외에 다른 제조사나 이런 데에서는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애플도 이 타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챙겨 보고요.

59번,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관련해서, 이 부분은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임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이러한 개정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는 이렇게 임시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개진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과방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준과 조금…… 기준이 없는 상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그런 이슈에 있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임시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는데 이것이 다른 법체계라든지 또 기관 간의 어떤 권한의 상충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임시기준을 만드는 부분들은 삭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올라온 법안에 그게 삭제가 돼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지금 올라온 법안에는 삭제가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전문위원 보고처럼 법원행정처랑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임시기준의 정의와 임시기준을 적용하는 절차 등은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수정안을 오늘 가져오신 건 아니고요? 지금 수정안이 있습니까? 수정안이 없어요……

○위원장 김도읍 수정안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 보고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배포 돼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수정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됐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동의 합니다.

○전주혜 위원 62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것은 전체회의에 좀 계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 법의 취지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장애인과 고

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 부분은 공감하고, 이러기 위해서 유무선 정보통신의 범위에 또 일부 추가하는 이런 것은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돼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런데 이런 비슷한 법안이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이의를 할 수가 있는 이의 권한이 있고요.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에는 그런 이의권도 전혀……

1분만 더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전혀 담보돼 있지 않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똑같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보니까 70조에 있는 과태료는 사실 이것보다 더 적은 금액이지요? 기존에 있던 과태료는 더 적은 금액인데 이것은 3000만 원의 굉장히 큰 금액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런 이의 신청권을 준달지 뭔가 불이행 시에 드는 그런 과태료의 수준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는 저는 이것은 조금 보완 장치, 그러니까 이의 신청권을 오히려 만들든지 아니면 과태료 금액을 낮춘달지 아니면 이것이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삭제를 한달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의견 수렴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의미에서 전체회의에 계류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금 중기부하고 협의 예정에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을 테니까 협의 빨리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유상범 위원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사실은

제정법안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보니까 법안 제정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중심이 돼서 전체적으로 각 부처 간 의견을 대부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와 같은 경우에 도박의 하나의 도구로 쓰일 우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지요, 논의하는 과정에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 메타버스 안에서 게임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어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저희가 국조실 주관하에 가이드라인을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법에서 지금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것이 없을 때 이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관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온라인 도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 법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게임물과 메타버스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행정기관 내의 그런 노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 법안에서도 다른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법을 기화로 해서 온라인 도박이 가능해진다 이런 것은 이 법체계에서는 맞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사행성게임과 관련해서 게임산업진흥법으로 규율을 하는데 5조에 의해서 사행성 게임과 관련된 법은 다른 게임산업진흥법에 규정돼 있는 경우는 그것을 우선 적용하고 그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이 법을 적용하는 이런 형태로 입법체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네요, 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리고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법안 자체는 정비는 어느 정도 잘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일단 방금 전주혜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임시기준을 원래는 하위 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임시기준의 정의와 임시기준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에다가 대체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구체적인 임시기준의 내용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도록 그렇게 법 구조가 돼 있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정한다면 부령이 되겠네요, 시행령은 아닐 것 같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박범계 위원 그런데 거꾸로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과학기술부는 원래 부처의 성격이 그런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개발 지향적이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법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라든지 또는 지금 얘기하는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이런 전통적인 법 이론에 맞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건데 이렇게 임시기준이라는 것을 빼면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소위 개발업자, 제작업자, 유통 등등등 이분들이 기준이 모호한데 지금 없애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말 그대로 창의적 개발 노력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법이 제정법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제정법입니다.

○박범계 위원 이 법의 원래 근본적인 취지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그래서 법원행정……

○박범계 위원 아니, 사람도 육상 뛸 때 100m 뛰는지 5000m 뛰는지 마라톤 뛰는지 이걸 알아야지 자기 체력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뛰는 건데 개발업자들도 마찬가지로 아니겠어요? 내가 이게 하는 것이 아까 무슨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지요.

우리가 상상을 해 봐도 예를 들어서 극히 선정적인 거라든지 또는 도박성이 강하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그걸 보통법이라고 할 수 있는 코먼로(common law) 입장에서 이걸 안 되는 거라는 것이 법원칙상 되어 있지만 그것 말고도 수많은 기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기준을 법에서 예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으로도 그런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을 법원행정처가 한마디 했다 그래서 짹 빼 버리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혁신성장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꾸로 한번 문제 제기를 해 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법원행정처의 문제 제기는 아마 저희들이 행정부 내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기본 방향을 설정하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이게 현존하는 법과 상충하거나 법에 위반되는 문제까지로 나아갈까 봐 그런 부분을 걱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한계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로서도 곤란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저희가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또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좀 더 해서 그런 오해를 풀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케이스 바 이 케이스로 규제샌드박스라든지 하는 일종의 시험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장치들은 국회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저희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준들을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방식대로 추진을 하면서 법원행정처하고도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 법 하는 사람들, 법 다루는 사람들을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이것만 물을게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기술 또는 메타버스서비스의 개발·제작·출시·판매·제공·임대 등의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기에 국제적으로 뒤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을 제정하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되게 중요한 법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삭제하더라도 이 법이 원하는 제정 취지의 100%는 아니더라도 70~80%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저희들은 일단 법을 제정하는 측면에서 보면 업계의 많은 요구사항들을 반영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로서, 그것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규제나 기준과 관련된 것은 조금 더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신속히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도읍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위원입니다.

과기정통부차관님,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해서 충분히 지금 수정안들을 만드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사실 최근에 나온 석학들의 책을 읽어 보면 기술 발전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1960년대, 1970년대까지 오프라인상에서의 기술 발전, 그 후에 인터넷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온라인상의 기술 발전, 이렇게 인류 기술 발전이 흘러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기술 발전 그리고 플러스가 시간을 절약하는 이 두 가지 화두로 석학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차관님도 더 잘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소병철 위원 그러면 온라인, 오프라인이 기술이 결합된 게 무언가, 그게 바로 지금 메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삭제 의견 이런 것 낸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 만들 때도 아시는 것처럼 기재부에서 많은 반대가 있어서 의원입법 과정에서 축소가 됐다가 결국은 우리 새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서 다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소병철 위원 사실 지금 메타 관련 가상융합 산업 진흥법안을 보면 그런 데자뷔가 일어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영역에서 기술을 선점하고 선도해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온 각 부처 의견들 중에는 그런 부분이 너무 시대에 대한 흐름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말씀 주신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인 조문들이 반영됐으면 저희들도 더 바랄 것 없겠습니다마는 기재부 입장도 이렇게 조문을 명시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또 조세감면 혜택이라든지 세제 혜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희들이 또 더 노력해서 민간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지금 이 법이 다른 부처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외 다른 부처들도 소관 사항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이 법제를 빨리빨리 정비해 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야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이 다른 부처들한테 그런 부분 강조를 해 보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메타버스는 사실 적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를 비롯해서 관계부처가 많이 머리를 맞대서 숙의하고 있는 것이고 또 관계부처에서도 메타버스가 새로운 산업, 기술, 서비스에 중점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올해 초에 있었던 CES에서도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메타버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전주혜 위원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체회의에 계류하자 이런 거는……

의견이 됩니까?

○전주혜 위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의 의견 수렴이 됐느냐 제가 그것을 물어봤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 소위 회의록을 확인한 바로는 그것은 아직 안 알아본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김도읍 지금 이견이 그런 쪽에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의견 제시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전주혜 위원 그래서 아까 차관 이야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 김도읍 예,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전주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류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렇게 하고요.

박동찬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찬 예.

○위원장 김도읍 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여기에 법원행정처 의견을 수용하여 임시기준 관련 조문을 삭제한다라는 것까지는 검토보고에 안 들어가 있지요?

○전문위원 박동찬 검토보고서에 그 의견만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의견만, 법원행정처의 이견 있다는 것까지만 했고 삭제하는 것은 수정의견으로 안 했지요?

○전문위원 박동찬 예, 수정의견으로 되지 않고 이 자료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차관님, 법원행정처도 이게 메타버스기술 또는 메타버스서비스 등의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임시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지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법원행정처도 이게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게 아니고 볼 여지가 없는지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바로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박동찬 전문위원, 어차피 법원행정처가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들도 지금 확답을 낸 게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박동찬 예.

○위원장 김도읍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법원행정처에다가 법원행정처에서 이렇게 뚜뜻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회신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십시오.

○박범계 위원 재채기 했는데 너무 고뿔 걸린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위원장 김도읍 박범계 위원님 잠시만요.

그렇게 오늘 이것은 전체회의에 좀 계류했다가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까 박범계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이게 빠져서 과연 이 법의 실효성이 얼마나 더해질지 아닐지 좀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원안의 조문을 살리는 방향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니까요.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답변을 한번 받아 봅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것으로 하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54항, 55항, 57항, 61항, 6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1항부터 53항까지, 56항, 58항, 60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9항, 62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4.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1)

65.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02)

66.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58)

67.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6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6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3)

7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3)

7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3)

7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7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7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8시16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64항 광산안전법 개정안부터 74항 특허법 개정안(대안)까지 11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 중 68항 및 72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박동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73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특허청장이 부정경쟁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 훼손·멸실·변경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며, 영업비밀이 포함된 행정조사기록이 법원에 송부된 경우 조사기록당사자가 열람 범위 및 열람인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조성한 물건 등에 대한 몰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양벌규정 적용 범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권고 불이행 사건에 대한 조사 관련 자료를 특허청장에게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8조제5항과 시정명령 시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 제8조제6항 등에 대하여 보완 검토 의견을, 특허청장이 법원에 행정조사기록을 송부하는 경우 조사기록당사자의 인적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는 절차 마련 등에 대한 추가 검토 의견 등을 제시하였고, 이에

특허청은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주서본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67항, 71항 등 3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64항, 65항, 69항, 70항, 74항 등 5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정점식 박동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강경성 산업부1차관님, 최남호 2차관님,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님, 오기웅 중기부 차관님, 김시형 특허청장직무대리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의사일정 68항에 관련돼서 지난 법사위에서 일반 공중용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관계부처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한번 계류가 된 적이 있잖아요.

관계부처 어떤 의견 다 취합을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저희가 대법원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대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반 공중용 토지더라도 개인의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유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만 그래서 판단 여부도 구체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보장하는 부분과 공공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 개별적인 사안을 신중하게 감안을 해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는 의견을 받았습시다.

○유상범 위원 법무부에서 대안 의견을 제시를 다 했네요, 보니까.

도시가스사업법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도 대안으로 의견을 냈지요, 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유상범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러니까 이 법에 있어서는 사실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사실상 신속한 도시가스 공급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 부분이 있고요.

다만 법무부를 포함해서 그런, 또 저희 산업위원의 과정 중에서도 의견이 있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

○유상범 위원 그 부분은 정리가 아직 안 된 건가요? 법무부에서 지금 대안으로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는데, 저희한테 자료가 왔는데 현재 이 부분이 법에는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렇습니다.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계류할 테니까 대안을 보시고 법무부와 이견을 해소하셔서 정리를 해서 다음 회의 때 의견을 제출하시면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점식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오늘 금융위에서는 안 나오셨나요?

○조정훈 위원 금융위는 다음번……

○소병철 위원 아니요, 미리 좀 혹시 있으면 불러 놓으려고……

○조정훈 위원 김소영 부위원장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관련해서 중기부하고 금융위가 참 여러 진통 끝에 합의안을 잘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가뜰이나 경제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금융위나 중기부에서 각각 입장이 어느 쪽을 반대하는 취지가 아니라 서로 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의견들을 내셨는데 어렵게 지금 합의를 하셨지요, 중기부 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오기웅 예.

○소병철 위원 금융위가 지금 안 나오셔서 그러는데요. 사실은 앞으로 이 법을 두 기관이 협의를 좀 해야 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요율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정부 내에서……

○위원장대리 정점식 소병철 위원님, 지금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점식 부위원장님 잠깐 발언대에 앉으시지요.

○소병철 위원 좌석에 앉아 주시면……

이 부분이 어렵게 합의안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금융위하고 중기부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합의안을 만드셨으니까 실제 운용 과정에서 그리고 앞으로 또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지금도 있다는 의견이 어느 한 기관에 있기 때문에 차관님이나 부위원장님한테 이것 좀 지난번처럼 진통 겪는 그런 거 없이 협조적으로 하시라고 당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차관님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오기웅 예, 앞으로 더 기관 간 협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말씀 주신 것 감안해서 협의를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기관에서 좀 섭섭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사위에서도 어렵게 지금 이 합의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기관이 그런 점,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앞으로도 지켜 주시면 좋겠다는 확실한 다짐을 받고 말씀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 위원 소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일정 제72항과 관련해서는 중기부와 금융위가 마련한 수정안이 지금 위원님들 좌석 위에 다 있습니다. 이 안을 토대로 해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4항, 65항, 69항, 70항, 7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66항, 67항, 71항, 73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2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

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68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5.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34)

7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7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7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8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8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8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8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2)

8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6)

8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7)

8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3)

8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0)

8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71)

8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9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9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2)

9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9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출)

9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8084)

(18시35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75항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
정안부터 94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20건의 법안
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 중 93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
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의사일정 제75항부터 92
항까지 및 94항 정무위원회 소관 19건의 법률안
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0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 다크
패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작위 의무 및 부작위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안 제13조제3항은 소비자에게 최초로 가격
을 알리는 표시·광고에 해당 재화를 구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안 제21조의2제1항에서 동
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유형의 행위를 작위 의
무 및 부작위 의무로 이중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
상 부적정한 점, 의무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징
금 처분의 법적 근거가 중복되는 점 등을 고려하
여 이를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
였습니다.

둘째, 안 제13조제7항은 재화 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상공급 후 유료 정기결제
로 전환되는 경우 사전에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 가격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의 항목에 증액 또는 전
환의 취소·해지를 위한 조건과 그 효과가 포함
됨에 따라 증액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일정 기간 재가입 제한 등 취소·해지 조건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지속 여부 및 결제
금액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소·
해지 조건에 한하여 고지사항으로 수정하는 의견
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안의 처리에 반대
하지는 않으나 개정안에 따른 온라인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작위 의무 및 부작위 의무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 행위와 중복되어 이중
규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
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초 가입 시뿐만 아
니라 유료 전환 시에도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
니다.

의사일정 제84항 등 9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75항 등 9건은 체
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님,
이희완 보훈부차관님,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님, 박종민 권익위 부위
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93번 보험사기 관련한 법안 관련
해서 좀 여쭙보겠습니다.

이게 금융위 산하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전주혜 위원 지난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이 돼서 이게 많이 대폭적으로 수용이 된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지
금 벌써부터……

○전주혜 위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용두사
미 꼴이 된 것 아닌가 사실 그런 아쉬움도 남습
니다. 대폭 삭제를 하셨네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그래도 저희가 알
선이나 광고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
분이었기 때문에……

○전주혜 위원 지금 남은 것은 5조의2로 보험사
기행위의 알선·권유 등의 금지 이것을 규정하고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8조로 처벌하는 그것만 지
금 남은 거고 그 이외에는 모두 다 삭제가 됐는
데 맞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아닙니다.

○**전주혜 위원** 아닌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요건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후속 절차를 고지하여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문제 제기된 건 상당수는 다 수용을 하셨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전주혜 위원** 예를 들어서 보험사기죄의 가중 처벌 이런 것은 그냥 삭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맞습니다.

○**전주혜 위원** 받아들이시는 거고.

그런데 저는 11조의2(보험사기행위로 인한 보험금의 반환) 사실 이것은 이게 꼭 아니라도 확정이 되면 사실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11조의2가 원래 한 것은 보험사기행위로 인해서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된다 이겁데요. 그러면 이것은 이 규정에 의해서 바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금 사실 민법상 너무 당연한 논리를 기재해서 저도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이게 규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것을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문제점이 지적이 됐다고 해서 또 삭제하는 게 과연 이게 적절한지 사실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합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상임위는 통과가 됐는데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처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시간도 얼마 안 남고 해서 관련 부분은 전부 다 삭제를 하는 걸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명단 공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금융위에서는 그냥 삭제 의견 수용하시겠다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저희가 사실 시간이 많으면 좀 더 협의를 할 텐데 일단 앞에 말씀드렸지만 보험사기 알선이나 광고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 추후에 좀 더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주혜 위원** 행정처나 법무부의 이견은 모두

다 수용한 수정안으로 지금 제출이 돼 있고 이것으로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취지이신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전주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 보훈부차관님!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안녕하십니까?

○**소병철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차관님 오셔서 보훈부가 아주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국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위원님 감사합니다.

○**소병철 위원** 오늘 의사일정 제76항부터 82항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고엽제후유의증 지원법, 국가유공자 예우법, 독립유공자 예우법, 보훈대상자 지원법, 참전유공자 예우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 이 개정안들이 보면 수당 같은 신청을 보훈부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어려운 분들에게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금 두 가지로 분류가 되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소병철 위원** 사실 예전에 제가 정무위에 있을 때 수당 관련되는 내용을 수급받는 분들이 선택을 하도록 하는 요소가 있어서 그걸 연로하신 분들이나 일반 분들은 구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훈부에서 가장 유리한 것을 수급자한테 안내를 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장 유리한, 어떤 경우에는 수당이 중첩되는 경우에 본인, 당신한테 제일 유리한 수당 신청을 수급자한테 선택하도록 하면 이분들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대신 신청하는 조항이 들어가서 이진 진일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 업무가 개선이 돼서 수급받는 분들이 보훈부에 와서 ‘지금 나는 이러이러한 상태입니다’ 하면 보훈부 직원이 또는 창구 직원이 ‘선생님한테 지금 제일 유리한 수당은 이겁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거나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확하게 유리한 수당을 안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서는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무원이 동의를 받고 직접 저희가 대신 신청해 주는 그 법안을 저희가 개정하는 거고 처음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히 유리한 수당을 안내를 하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병철 위원 그렇게 업무가 개선됐다니까 다행입니다.

또 하나, 최근에 각 방송에서 다큐멘터리 제작한 것에 보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만주로 또는 시베리아 쪽으로 갔다가 강제 이주돼서 중앙아시아로 간 우리 동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보훈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주 잘하신 건데요. 해외에 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발굴하거나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드는 작업을 보훈부에서 하고 계십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현재 저희가 나름 역점 사업으로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 또 예산도 그쪽에 상당히 많이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고. 지금 저희가 해외의 발굴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자료 부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역량 투입은 지금 그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해서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병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하시고 있다고는 하는데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보훈부도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보훈부에서 지금 국내에 계시는 유공자들에 대해서 똑같이 대우를 해 주시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보훈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특히나 지금 다큐 같은 것 보면 이분들이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취득 못 하고 있는 데서 오는 갖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 수급 신청을 대신한다는 부분을 보고 보훈부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유공자들에 대해서 국적 취득하는 부분도 보훈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드리면서 차관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위원님 말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차관님께서 약속하시면 확실히 실행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오늘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불법체류에 가깝거나 아니면 신분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유공자들의 후손들, 가족들에 대해서 보훈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5항부터 83항까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4항부터 92항까지 및 94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3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권 칠 승	김 도 읍	김 승 원	김 영 배
박 범 계	박 주 민	박 형 수	소 병 철
송 기 현	유 상 범	이 탄 희	전 주 혜
정 점 식	조 수 진	조 정 훈	

○청가 위원(2인)

김 의 검 박 용 진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정	성	희
전 문 위 원	한	석	현
전 문 위 원	박	동	찬
전 문 위 원	이	화	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	구	연
기획재정부			
제 1 차 관	김	병	환
재 정 관 리 국 장	최	한	경
교 육 부 차 관	오	석	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	윤	규
제 2 차 관			
외 교 부 제 2 차 관	강	인	선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심	우	정
국 방 부 차 관	김	선	호
행정안전부			
차 관	고	기	동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	한	경
국 가 보 훈 부 차 관	이	희	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	병	극
산업통상자원부			
제 1 차 관	강	경	성
제 2 차 관	최	남	호
통상교섭본부장	정	인	교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	기	일
환 경 부 차 관	임	상	준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	현	환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오	기	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	유	경
경 찰 청 장	윤	희	근
소 방 청 장	남	화	영
문 화 재 청 장	최	응	천
특 허 청 장 직무대리	김	시	형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	홍	선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	종	민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	소	영
원자력안전위원장	유	국	희

○법원측 참석자

법 원 행 정 처 장	천	대	엽
-------------	---	---	---

【보고사항】

○의안 회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 2024. 1. 5. 정부 제출)

이상 2건 1월 8일 회부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2024. 1. 9. 전주혜·윤창현·우신구·정경희·

이태규·주호영·이명수·유상범·조수진·

유경주 의원 발의)

1월 10일 회부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4. 1. 10. 김남국·양정숙·강득구·양이원영·

김승원·민형배·윤영덕·강민정·이성만·

박성준 의원 발의)

1월 11일 회부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
발의)

(2024. 1. 11. 서삼석·오영환·이개호·양정숙·

신정훈·송갑석·김승남·진성준·신현영·

윤영덕 의원 발의)

1월 12일 회부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2024. 1. 12. 전주혜·우신구·김예지·유상범·

조수진·유경준·윤창현·윤주경·이명수·

홍문표·이태규·정경희·박대수·정희용 의원

발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2024. 1. 12. 전주혜·우신구·유상범·조수진·

유경준·윤주경·이명수·홍문표·이태규·

정경희·박대수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2024. 1. 12. 정부 제출)

이상 3건 1월 15일 회부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4. 1. 15. 정일영·강민정·기동민·김교홍·

김두관·김병기·김상희·김주영·신동근·

이동주·이성만·장경태·전혜숙·정성호·

허숙정·홍정민 의원 발의)

1월 16일 회부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4. 1. 16. 김도읍·유경준·권명호·김석기·

윤한홍 · 金炳旭 · 권성동 · 지성호 · 박형수 ·
유상범 · 장동혁 의원 발의)
1월 17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70호	2024. 1. 9.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109호	2024. 1. 9.	법무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제1071호	2024. 1. 12.	법무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158호	2024. 1. 23.	법무부